



2023.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V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윤성 이규민 이지선 이상아 강지혜

윤성식 박나경 남명진 유연제 민성철

이미선 신지현 유다연 김민석 강만원

김성은 이선화 정성영 허아름 이한성

정금연 황진술 박은형 김소연 한서영 예산분석관

지원 | 정진아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23.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7.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을 새로 추가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⑥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I. 개 요 / 1

1.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3
가. 현 황	3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6
2.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9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9
(1) 현 황	9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10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12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19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 25

1. 위원회 공통	27
가. 현 황	27
2. 국회운영위원회	30
가. 현 황	30

CONTENTS

3. 법제사법위원회	31
가. 현 황	3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2
(1) 신규 사업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및 집행잔액의 목적 외 사용 지양(법무부)	32
(2) 변호사시험 관련 특근매식비 및 기타운영비의 현금집행 및 현금보관 지양 필요(법무부)	35
(3) 업무추진비 카드사용건의 부적정 지급처리 문제(헌법재판소)	37
(4) 토지대여료 세입예산 정확한 편성 필요(대법원)	38
4. 정부위원회	40
가. 현 황	4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41
(1)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조치의 성과 미흡(공정거래위원회) ·	41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과다 출자의 문제(금융위원회)	42
(3) 행정심판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국민권익위원회)	44
5. 기획재정위원회	47
가. 현 황	4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47
(1) 평균배당성향 산정방식 개선 미흡(기획재정부)	47
(2) 재정사업심층평가 조기 착수 노력 필요(기획재정부)	49
(3) 국제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의 개선 조치 미흡(국세청)	51

CONTENTS

6. 교육위원회	54
가. 현 황	5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55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도교육청 기금 적립금 과다 개선(교육부)	55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0
가. 현 황	6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0
(1)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출연금 교부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8. 외교통일위원회	64
가. 현 황	6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4
(1)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집행방식 부적정 문제(외교부)	64
(2)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통일부)	66
(3)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지연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통일부)	67
9. 국방위원회	70
가. 현 황	7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1
(1) 과다 편성된 군인연금 보전금 잔액에 대한 정산 필요(국방부)	71
(2) 대체역 심사 기간 연장 의결 제한 방안 마련 필요(병무청)	72
(3)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방위사업청)	73

CONTENTS

10. 행정안전위원회	76
가. 현 황	7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7
(1) 클라우드 전환계획의 적정성 문제(행정안전부)	77
(2) 의료의 질 향상 보상금 예산 부적정 편성·집행 문제(경찰청)	78
(3) 대통령선거관리 예산의 집행부진 문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	80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2
가. 현 황	8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3
(1)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집행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필요(문화체육관광부)	83
(2)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체계적 추진 필요(문화재청)	8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8
가. 현 황	88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8
(1)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집행 저조(농림축산식품부)	88
(2)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농림축산식품부)	90
(3) 지역특화작목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미반영 문제(농촌진흥청)	92
(4)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사업의 지연 문제(해양수산부)	94
(5)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저조(해양수산부)	95
(6) 변상금 등 세입과목의 수납률 저조(해양경찰청)	96

CONTENTS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8
가. 현 황	98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9
(1) 가정용스마트플랫폼구축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및 실집행 지연(산업통상자원부) ·	99
(2)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산업통상자원부)	101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03
(4)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운용 필요(특허청) ·	104
14. 보건복지위원회	107
가. 현 황	10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8
(1)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예산 연례적 부족 문제(보건복지부)	108
(2)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보건복지부)	110
(3) 질병관리청 R&D 사업(질병관리청)	113
15. 환경노동위원회	116
가. 현 황	11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6
(1)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의 예산 규모 조정(환경부)	116
(2)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집행 관리 철저(환경부)	119
(3)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효과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121



CONTENTS

16. 국토교통위원회	125
가. 현 황	12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26
(1)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국토교통부)	126
(2) 도시철도건설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국토교통부)	128
(3) 전용 후 불용 최소 관리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1
17. 여성가족위원회	133
가. 현 황	13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33
(1)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미지정 문제(여성가족부)	133
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139



1. 개 요

가. 현 황

국회는 2022년 11월 10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¹⁾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1,416건, 부대의견²⁾ 21건을 채택하였다³⁾.

결산의 사후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회가 결산 심의 및 승인권을 통해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산 심의는 예산안 심의와 달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치더라도 결산의 내용이 바뀌거나 수정되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상태로 가결된다.

따라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 2월 「국회법」 개정⁴⁾을 통해 시정요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회는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오고 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 변상과 징계만이 예시되어 있으나, 국회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의 5가지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며,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로 적용되기도 한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944건으로 가장 많고

유연제 예산분석관(fabric_yyj@assembly.go.kr, 6788-4651)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전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는 없었다.

4) 「국회법」 개정(법률 제6855호, 2003.2.4., 일부개정)에 따라 제84조제2항 후단 신설

주의 457건, 시정 79건 순이다. 이 중 64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및 조치대상 기관]

유형	적용기준	조치대상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 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도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이드」, 2022.8.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결산	0	0	77	448	931	(62)	1,394
예비비	0	0	2	9	13	(2)	22
합계	0	0	79	457	944	(64)	1,416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3.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22건)는 별도로 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 11.

국회 결산심사 결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7회계연도 1,810건에서 2018년 1,356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9회계연도 1,647건, 2020회계연도 1,88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회계연도 1,416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심사 결과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시정요구	1,810	1,356	1,647	1,881	1,416
	부대의견	19	23	19	21	21
	감사요구	4	4	4	4	0
결산	시정요구	1,790	1,302	1,613	1,846	1,394
	부대의견	19	23	19	21	21
	감사요구	4	4	4	4	0
예비비	시정요구	20	54	34	35	22

주: 정보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변상은 0건, 징계는 6건으로 건수가 미미하고, 제도개선이 4,92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2017	0	2	315	554	979	(40)	1,810
2018	0	1	198	414	800	(57)	1,356
2019	0	1	234	518	1,006	(112)	1,647
2020	0	2	220	534	1,197	(72)	1,881
2021	0	0	79	457	944	(64)	1,416
합 계	0	6	1,046	2,478	4,926	(346)	8,110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3. 정보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회계연도(2019회계연도 또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한 번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반복시정요구 사항은 193건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64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되었다

[최근 5년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00	137	186	240	193
전체 시정요구	1,833	1,356	1,667	1,881	1,416
반복 시정요구 비율	10.9	10.1	11.2	12.8	13.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주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치내용이 미흡하여 시정요구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고,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개년(2019~2021회계연도) 동안 모든 해에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2회계연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특별감찰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감찰관 공석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특별감찰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새 특별감찰관 임명 시 곧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 유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정치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치 미완료로 보고하였는데, 새 감찰관 임명 전까지는 시정요구사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건축공사 착공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2022년 12월 20일에 착공이 승인되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연말 착공승인에 따라 예산액 20억원 중 집행액은 5억 2,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6.5%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융자사업별 부실률 현황 및 하반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고려할 때 부실규모의 확대가 우려되므로, 정책자금(융자)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2022년 특별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였고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어 지속적인 사후점검이 필요하고 일부 정책자금 유형은 2021년 대비 2022년 부실률이 상승하였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및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사업은 2014년도 신규 편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에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총사업비 조정,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기준 설계 공모를 진행 중으로 설계 착수 이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유상관리전환 협의에 따른 부지대금을 제외하면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수소차 보급 사업은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소버스의 집행실적(45.8%)이 저조하므로, 실제 수요를 점검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수소승용차 지원 예산을 감액하였고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집행실적 점검 국비를 교부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2년도 결산 결과 수소승용차 등 전 지원 차종의 보급 실적 부진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고 수소버스의 집행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45.8% → 36.3%)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공정·추진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2022년에는 물가상승분 반영, 준공기한 준수 등을 위한 필수소요에 대해서만 이·전용을 실시하였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2년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사업으로 10억 6,400만원을 전용하여 3억 6,000만원을 불용(전용액 대비 33.9%)하였고, 2-4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

터 건립 사업으로 12억 6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5억 3,200만원을 불용(전용액 대비 44.1%)하는 등 집행부진 및 총사업비 조정액 착오 등에 따른 전용 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2019~2021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 중 2022회계연도 조치가 미흡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시정요구 여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2019	2020	2021	
법무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노력 필요	○	○	○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으로 특별감찰활동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정치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정요구 반복이 예상됨
해양수산부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 센터 건립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	2022년 예산액 20억원 중 실집행액은 5억 2,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6.5%에 불과함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사업 부실률 관리 필요	○	○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어 지속적인 사후점검이 필요하고, 일부 정책자금 유형은 2021년 대비 2022년 부실률이 상승하였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및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	○	부지매입 대금을 제외한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 재발생
환경부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집행 관리 철저	○	○	○	2022년도 결산 결과 전 지원차종의 보급 실적 부진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고, 수소버스의 집행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45.8% → 36.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불필요한 예산 전용 지양	○	○	○	2022년 창의진로교육원건립사업 및 2-4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전용액 대비 불용액 규모가 각각 33.9% 및 44.1%로 나타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바탕으로 재작성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 현 황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23년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2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5월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결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1,416건에 대하여 1,175건(83.0%)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41건(17.0%)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2017~2018회계연도 결산 후속 조치결과에 있어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은 10~13% 내외 수준이다가, 2019회계연도 16.4%, 2020회계연도 18.4%로 증가하였고, 2021회계연도는 17.0%로 다소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7회계연도 결산	1,810	1,577	233	12.9
2018회계연도 결산	1,356	1,171	185	13.6
2019회계연도 결산	1,647	1,377	270	16.4
2020회계연도 결산	1,881	1,534	347	18.4
2021회계연도 결산	1,416	1,175	241	17.0

주: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⁵⁾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라고 보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조치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으며 향후 소관 부처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산정한 2021회계연도 전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의 평균값은 산술평균기준 40.38%로 정부의 중기목표(2022~2026년간 40% 유지)를 달성하였으나 해당 평균배당성향에는 배당을 미실시한 기관이 제외되어 결과가 과대평가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산술평균 기준을 고려하여 정부출자기관의 평균배당성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출자기관의 경기대응력 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정부배당수익을 전년 대비 1.1조원 상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평균배당성향 산정 시 배당을 미실시한 기관을 여전히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 결과에 따른 배당성향은 40.38%였으나, 2022회계연도 결과에 따른 2023년 배당성향은 39.9%로 소폭 하락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자산 △2조 4,725억원, 자산 대비 부채비율 118.6%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자체수입 비중이 8.9%로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어, 국회는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여유자금을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하여 2.39% 수익을 달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순자산이 5조 2,046억원으로 감소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36.2%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었다.

둘째,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예산과다 및 과소 편성 또는 실집행을 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였으나, 추가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하거나 면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322억 1,000만원 중 148억 2,300만원(46.0%)이 집행되고 173억 8,700만원은 불용되어, 국회는 향후 지급 시차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은 280억 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102억 6,800만원(36.7%)이 집행되고 177억 3,700만원(63.3%)은 불용되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최근 3년간 예산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예산 부족분도 증가(2019년 10억 7,000만원 → 2020년 22억 6,200만원 → 2021년 49억 9,900만원)하고 있어, 국회는 지급 인원 및 평균 이용시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가산급여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확대 편성하였으나, 2023년 6월 기준 가산급여 지급인원은 예산 편성 6,000명 대비 9,184명으로 3,000명 가량이 많고 평균 지원시간은 예산 편성 151.5시간 대비 194.6시간으로 43.1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40억원 중 타 세부사업으로 18억원을 이용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10.6%에 불과하여, 국회는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나 추진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급 계획 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조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022년 동 사업의 예산은 20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용액 6억 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5,000만원이 지자체에 교부되고 그 중 22%인 3억 7,900만원만 실집행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실질적인 수요나 추진 여건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부액의 22%만 실집행 되었으므로 국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정부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24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치 중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 제출시점에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이행완료 시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2~4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재차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2023년 1월에 제출되었고,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는 2023년 5월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 그 이후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즉, 2023년 1월에 제출한 조치결과에서 조치중으로 보고한 건수가 412건이었는데, 5월에 제출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에서는 171건을 추가로 조치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도 조치중으로 보고한 241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후 이행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하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전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당해연도 초와 결산 시점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치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후속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⁶⁾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미완료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결과를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이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1.4.6.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최근 5년 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현황]

(단위: 건, %)

회계연도	조치결과보고 일자		조치결과 ¹⁾			
	조치결과보고	후속 조치결과보고	시정요구사항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2017	2019.2월	2019.5월	1,810	1,577	233	87.1
2018	2020.1월	2020.5월	1,356	1,171	185	86.4
2019	2021.1월	2021.5월	1,647	1,377	270	83.6
2020	2022.3월	2022.5월	1,881	1,534	347	81.6
2021	2023.1월	2023.5월	1,416	1,175	241	83.0

주: 1) 후속 조치결과보고 기준 조치결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둘째,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3년 4월 기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중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 명절상여금 인상 등 29건은 예산의 증액이나 예산사업의 신설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예산안 심의 시 시정요구 이행을 위한 필요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하여, 결산심사의 시정요구가 예산심사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1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사항 중 예산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례]

부처명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회	국회사무처는 국회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3년도 예산안 국회 과정에서 국회 공무직 근로자 명절상여금 인상, 가족수당 신설 등을 위한 예산 증액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부대의견이 의결됨 2024년도 예산안 요구 시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 상여금을 공무원 명절상여금과 동일한 수준(기본급의 120%)으로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처명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법무부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아·전용 등의 집행 관행 개선 필요	-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는 집행 당시보다 2년전의 결산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편성 이후 지자체별 상이한 공공요금 단가의 인상, 신규소요로 인한 사용량 변화 등으로 예산집행에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고려한 필요예산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수용인원 변동 추이와 공공요금 단가 인상을 등을 반영한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적극적인 신규 기본연구사업을 발굴하고, 기본연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일반연구사업을 기본연구사업으로 전환하여 기본연구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기관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신규 기본연구사업의 발굴뿐만 아니라, 일반사업 중 연구사업 정의에 따라 기본연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등의 기본연구사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는 적정 진료단가를 반영하고 진료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	대상별 진료인원 및 단가 등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분석·검토하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금융위원회	2027년까지 공적자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회계 전입금 수준 및 구체적인 연도별 상환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적정 일반회계전입금 예산 편성 등 공적자금 상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 - 향후 실제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에 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 법정 기금청산시한인 2027년까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 -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요구 여부 및 요구수준 등을 판단할 계획

부처명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연·보조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문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 수행 비중을 제고할 것	- 홍보, 통계 등 전문성 필요가 적은 사업 위주로 23년 예산에 직접수행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향후 인력충원,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후 단계적으로 직접수행 사업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순예수 금액이 크게 감소하여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공자기금 순예수 금액 감소로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 나갈 계획
국세청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세부사업의 모바일 송달 예산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 등 다른 세부사업의 모바일 송달 예산과 통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4년 예산 편성이 완료된 후 ‘근로·자녀 장려세제 운영’ 세부사업의 우편·모바일 발송 요금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으로 이관할 예정임
통일부	5종의 북한이탈주민 가산금은 지급사유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가산금 지급사유별로 지급요건 해당 시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초과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내역사업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에서 지역회의의 기획사업비 용도의 보조금을 편성목적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편성·집행할 것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중 정책회의 성격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4년부터 직접집행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임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예산 반영 필요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납부) 사전절차였던 ‘행위허가’ 없이, 바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추진 중(‘23.1월~)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후에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완료 후인 '25년 예산에 보전부담금 편성 예정

부처명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행정안전부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도서개발을 위해 특수상황지역(도서) 개발사업의 한도액을 2배~2.5배 증액할 것	'24년 예산 신청시 섬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문화체육관광부	수지차 보전기관인 예술의전당 인건비 및 경상비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국고보조 방안을 마련할 것	'18년 이후 기존 결산 추이 등을 반영하여 자체수입 편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23년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편성 시 자체수입 현실화 반영 추진 중
문화재청	사전에 사업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사업예산 규모를 추계할 수 있어 총액계상사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분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사전예측이 가능한 일부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내에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통합 관리 시행 - 총액사업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예측 가능사업은 일반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의 대상 표본 수를 확대하고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는 한편, 검역본부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기본경비가 아닌 검역본부정보화 사업예산으로 수행할 것	- 만족도 조사 대상 표본수 확대 및 다양한 조사방법 활용을 위하여 '24년도 정보화 예산 확보 추진 '24년 검역본부정보화 일반용역비 3천만원 증액 요구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시험 분석 수수료 등 기관의 최근 수입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격차를 줄이는 한편,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자체 수입 동향 및 종전부동산(산림비전센터) 매각 예정에 따른 임대수입 등 사업외수입 현실화(안)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약 30억 원)을 편성하겠음

부처명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을 통해 계획에 따라 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장기적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세울 것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완료 ('23.4월), 향후 '24년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24년 정부안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방식 변경(단년도→2개년 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 조사·심판 시스템 운영 사업과 해양안전심판 국제협력 사업을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 소관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해당 내역사업의 이관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예정
특허청	◦ 이러닝 교육운영의 경우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사업 기획·관리·홍보·확산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관리용역비(210-15목)보다는 일반용역비(210-14목)로 예산을 편성할 것	◦ '23년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내역사업은 '이러닝교육 및 시스템 운영'으로 통합되었으므로 내역사업 분리 및 비목 변경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음
	◦ 국가가 보유한 해외 특허권의 수가 증가할 경우 이에 맞게 특허 연차료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여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이미 보유한 특허에 대한 차년도 연차료를 정확히 산출하고, 매년 신규 등록되는 해외 국유특허에 대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해외 국유특허에 대한 연차료 지급지원을 최소화하겠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침 제작 예산을 반영할 것	◦ 지침 제작 예산 확보위해 노력하겠음
	◦ 사업안내책자 배포 등 연례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	◦ 사업예산 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노력
	◦ 음주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음주친화적 환경을 건강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에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기재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부처명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기상청	◦ R&D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조경, 미화, 근무공간 개선 등과 같이 시설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 사업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 R&D 성격에 맞지 않는 일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기상청 타세부사업으로 이관토록 추진중('24년 예산에 반영)
고용노동부	◦ 출퇴근재해 보호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문의사수당 예산을 맞춤형 서비스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는 등 자문의사수당 관련 예산을 통합·재분류할 것 ◦ '산재병원 본부운영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운영비 지원 예산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로 이관할 것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이 다른 용도의 운영비로 혼용되지 않게 위 수당 예산을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사업에서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사업의 내역사업인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사업으로 이관할 것	◦ '24년 예산안 요구 시 「출퇴근재해보호지원사업」의 자문의사수당 예산을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사업」 내 「맞춤서비스지원」으로 이관·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 ◦ '24년 예산안 요구 시 산재병원 본부운영지원 예산을 근로복지공단 운영비에 이관·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의 다른 용도 운영비로 혼용되지 않도록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에서 산재근로자 요양관리로 이관·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
국토교통부	◦ 매입공공기관의 재매각이익에 대한 정산 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상환 재원 방안을 마련할 것	◦ '24년 혁특회계 세입예산에 '22년까지 발생하여 정산한 농어촌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재매각 이익 5,838억원을 반영하고, '23년 발생할 이익에 대하여 '24년 세입 추가 반영을 기재부와 협의 중

자료: 전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정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⁷⁾ 21건에 대하여 2023년 4월 기준 조치완료 14건, 조치 중 7건으로 보고하였다.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중은 2017회계연도 42.1%에서 2018년도 39.1%로 증가하였으나, 2019회계연도 47.4%, 2020회계연도 42.9%, 2021회계연도 33.3%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부대의견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대의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7회계연도 결산	19	11	8	42.1
2018회계연도 결산	23	14	9	39.1
2019회계연도 결산	19	10	9	47.4
2020회계연도 결산	21	12	9	42.9
2021회계연도 결산	21	14	7	33.3

자료: 대한민국정부,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각 연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대통령 경호처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확대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 경호구역은 필요시 경호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여 운용 - 경호구역을 확대한 이후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	조치완료

7)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전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감사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대하여 정기 감사 시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을 포함하여 실시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을 위한 감사를 계획 중이나, 구체적 착수 시기는 전체 감사 일정과 코로나 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	조치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 서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회의개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위원회 정비 -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유사 위원회 통합, 관계부처 협의체 전환 등을 통해, 23년도 예산 3,391백만원 절감 - 회의 운영시 불필요한 회의개최 비용을 줄이도록 내부 전파·당부	조치완료
국가 보훈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보훈단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 위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범위와 시정조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해 정부입법계획 제출	조치완료
금융 위원회	‘핀테크 지원’ 사업의 사례와 같이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	향후 국회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취지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치할 계획	조치중
교육부	신도시의 과밀학급 현황과 초등돌봄교실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 신도시 포함 전국 과밀학급 현황을 분석하여 중장기 과밀학급 해소 계획을 지속 추진 중 - 지역별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 조사 실시(‘23.3.), 교육청 주도로 인근학교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확대 계획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용하여 시설구축 추진	조치중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국방부	「학교급식법」 등을 참조하여 군 급식에 우수한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산점 부여 및 특별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접경지역 농어민의 군 급식 재료 납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학교급식법」을 참고하여 위생·품질 분야를 개선하는 등 우수한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및 가공식품 원재료에 지역산 포함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접경지역 농어민의 군 급식 재료 지자체 등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속 노력하겠음	조치완료
문화체육관광부	실집행 저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실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완료	조치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2021회계연도까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조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효과 분석 연구' 용역 수행중 (~'23.6월)	조치중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 단기적으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춰, 불요불급한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부족재원은 타 회계·기금 전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을 통해 충당 - 에특회계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 타부처 세출사업 회계이관 및 일반회계 전입 등에 대해 관련 부처(기재부, 환경부 등)와 지속 협의 추진	조치완료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보고한 사업계획과 달리 예외적 대상에 예산을 집행한 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7월에 그린산업 유망 중소기업도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3차 추경 보고 및 예산서 반영 - 다만, 28% 비중의 예외적 선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예외적 인정 사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음	조치완료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정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노력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용역 진행	조치완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찰서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충실히 수행	전국 경찰서(258개소)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22.10.5.~10.21.) 후, 각 시·도에 실태조사 결과 및 미설치·부적합 설치 경찰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실시 안내	조치완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을 상세히 수립하도록 함	‘저출산 정책평가 및 과제발굴’ 연구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전 작업 진행 중 - 상기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사례 발굴 등을 통해 5차 기본계획(‘25~’29) 수립 예정(‘24년 하반기)	조치중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수당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완료	조치완료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평가 및 제도의 관리계획 등 개선방안 검토	- 허가구역 지정권한이 이원화(국토부 또는 시·도)된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와 관련 없는 지역까지 규제하는 일이 없도록 허가구역 경계설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 완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개정, ‘22년 10월	조치완료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공통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은 이전용 및 세목조정, 기금 자체변경, 불용예산액 활용, 비목 신설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도록 함	- 당초 예산 미계상사업 추진 여부, 국회 의결취지와 다른 사업 집행 여부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겠음 - 국회 심사 외에도 정부 내부적으로도 「국가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집행관리를 해 나갈 계획	조치완료
	정부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사업의 예산집행 및 집행효과에 대한 자료를 매년 국회에 제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및 효과 자료를 국무조정실 협업으로 제출 예정	조치중
	정부는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인력 수요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지역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범부처 협업으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 수립 및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 설정(‘23.2.1.) -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지방에 강화된 재정지원 계획 마련(‘23.3.6.)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마련(‘23.2.1.) 및 시범지역 선정·운영(‘23.3.9.)	조치완료
	정부는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확대 지원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21년 1월 풍수해보험 정부지원을 상향 및 ‘22년 4월 재해취약 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의 보험료 전부지원 법제화 - 민간기업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가입 활성화 지원 - 제도개선 TF를 통한 가입금액 상향 및 보장범위 확대 등 상품 개선 추진	조치완료
	정부는 다중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125조원+@ 민생안정대책 마련·시행,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 추진 중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전 부처 공통사항은 제도개선 2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전 부처 공통사항은 총 5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 3건, 조치 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전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공통	0	0	0	0	2	0	2	2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전 부처 공통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공통	5	3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전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력산업 기반기금 재정악화 대책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확대에 여유재원이 크게 감소 ◦ [시정요구사항] 정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특정 정책에만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히 운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에특회계] 성과미흡 또는 집행부진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적정규모 편성 ◦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조치완료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기금전입금 예산편성· 수납부처 일치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받는 기금전입금은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편성되나, 실제 징수결정 및 수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상 불일치가 발생 ◦ [시정요구사항]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기금전입금 중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의 예산 편성 및 실제 징수결정·수납 부처를 일원화할 것	◦ 세입 예산 편성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전입금도 징수·수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및 징수·수납 실시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

[전 부처 공통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은 이전용 및 세목조정, 기금 자체변경, 불용예산액 활용, 비목 신설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도록 함	◦ 당초 예산 미계상사업 추진 여부, 국회 의결취지와 다른 사업집행 여부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겠음 ◦ 이전용 등은 분기별로 국회에 그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정부 내부적으로도 「국가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집행관리를 해 나갈 계획	조치완료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정부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사업의 예산집행 및 집행 효과에 대한 자료를 매년 국회에 제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및 효과 자료를 국무조정실 협업으로 제출 예정	조치중
정부는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인력 수요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지역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지방에 강화된 재정지원계획 마련 -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마련 및 시범 지역 선정·운영	조치완료
정부는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확대 지원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 재해취약지역내 경제취약계층의 보험료 전부지원 법제화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가입률 증가 - 민간기업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가입 활성화 지원	조치완료
정부는 다중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	민생안정대책 마련·시행,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을 통해 고금리 상환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중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44건으로 주의 13건, 제도개선 32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말 까지 조치완료가 39건이며, 조치중 5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0	0	0	4	1	0	5	5	0
대통령경호처	0	0	0	0	2	0	2	2	0
국회	0	0	0	7	21	(1)	27	22	5
국가인권위원회	0	0	0	2	8	0	10	10	0
합 계	0	0	0	13	32	(1)	44	39	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대통령경호처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134건으로 시정 9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1건이며, 이 중 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10건이며, 조치중 24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영장심의위원회 사업 등 4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법무부	0	0	5	15	47	(2)	65	49	16
법제처	0	0	0	4	8	0	12	12	0
감사원	0	0	1	2	8	(1)	10	10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	0	2	6	4	(1)	11	6	5
헌법재판소	0	0	0	2	8	0	10	9	1
대법원	0	0	1	12	16	(3)	26	24	2
합 계	0	0	9	41	91	(7)	134	110	2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감사원	1	0	1
합계	1	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신규 사업 예산의 적정규모 편성 필요 및 집행잔액의 목적 외 사용 지양(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법무부는 2021년도에 신규 편성된 3개 사업(영장심의위원회 수당, 서민다중피해범죄 TF 운영 일반수용비,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수당 등)의 예산이 비합리적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과다편성됨으로써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총 17억 8,500만원 가량의 집행잔액을 불용시키지 않고, 검사실 소모품 및 코로나 19 방역물품 등의 구입용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국회는 집행잔액을 경상적 경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신규 예산 편성 시 합리적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3년 예산에 각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 집행 시 집행잔액을 경상적 경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시정요구의 대상이 된 3개 사업에 대한 2023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집행현황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의 경우 여전히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시정요구의 대상이 된 2021년 신규 편성 3개 사업은 각각 영장심의위원회 수당, 서민다중피해범죄 TF 운영 일반수용비,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수당으로 각 사업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의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시정요구 대상 신규 편성 3개 사업 관련 위원회 등 현황]

사업명	운영 현황
영장심의위원회	소속: 6개 고등검찰청 / 성격: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 민간위원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기능: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 위원회에서 그 당부를 심의·의결
서민다중피해범죄 TF	소속: 형사3과 / 성격: 현안 대응 부서 사업 구성: 형사3과 전직원 이하 전국 청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검사 98여명 관련 법령: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별표4 2 내지 4호 기능: 2019년 2월 대검 형사부 산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가 신설됨에 따라 다수의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일선 검찰청 지휘·지원
범죄피해 재산환부심의회	소속: 18개 지방검찰청 / 성격: 자문위원회 구성: 각 지방검찰청별 7명(위원장 포함)(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 관련 법령: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기능: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근거하여 몰수, 추정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

자료: 법무부

각 사업 관련 예산은 2022년에도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2억 8,900만원 중 2,063만원이 집행(집행률 7.1%)되었고 서민다중피해범죄 TF의 경우 2억 1,340만원 중 1억 2,372만원이 집행(집행률 58.0%)되었으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경우 4억 9,350만원 중 260만원이 집행(집행률 0.5%)되었다.

[2022년도 동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회, %)

구분	산출내역	편성		집행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금액	회수	금액	회수		
영장심의위원회	(일반수용비)						
	수당 190,800	200,000	72	4,672	2	7.1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 개최되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저조
	+부대비용 9,200						
	(자산취득비)						
	89,000	89,000		15,955			

(단위: 천원, 회, %)

구분	산출내역	편성		집행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금액	횟수	금액	횟수		
서민다중 피해범죄 TF	(일반수용비) 135,400 (사업추진비, 임차료) 18,000 (연구용역비) 60,000	213,400	4	123,720	2	58.0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 한 교육기회 감소 등 요 인으로 집행 부진
범죄피해 재산환부 심의회	심의수당 388,800 +자문수당 86,400 +개최비용등 64,800	493,497	36	2,596	0	0.5	피해자의 환부청구 또는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이 있는 경우 개최되는 데, 피해자의 청구나 이 의신청이 저조함

주: 편성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1년도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집행액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감액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일부 사업 예산은 여전히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도 5월 기준 서민다중피해범죄 TF의 경우 40.6%였던 반면, 영장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0.1%,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경우 0.9%로 나타났다.

[2022년도 동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5월말)	집행률 (5월말)
영장심의위원회	869,000	43,326	5.0	289,000	20,627	7.1	200,000	220	0.1
서민다중피해범죄 TF	652,000	125,400	19.2	213,400	123,720	58.0	213,400	86,605	40.6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493,497	1,050	0.2	493,497	2,596	0.5	49,600	450	0.9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연례적으로 영장심의위원회,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도 및 2023년도의 집행액 수준 및 회의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변호사시험 관련 특근매식비 및 기타운영비의 현금집행 및 현금보관 지양 필요(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법무부는 2021년도에 변호사시험 관련 시험장 책임관·관리관 등의 증식비 및 시험 감독수당을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하였으며, 동 경비를 2021년 12월에 현금 인출 후 보관하였다가 2022년에 최종 지급하였다. 국회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현금 집행 및 보관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시험장 책임관·관리관 등의 수당 등을 시험 종료 후 디브레인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공문 시행(2022.11.8.)하여 시험일 현장 지급에 필요한 현금지급 및 보관이 불요하였고 시험 시행연도에 계좌이체하므로 당해연도 예산 사용을 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시정요구 조치완료 보고 이후에도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시험위원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현금지급을 하는 등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장 책임관·관리관 등의 증식비 및 시험 감독수당을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1)을 위배한 것으로, 동 규정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2)를

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외딴곳·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2) ① 운영비(일부 제외)·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영의 위임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4항³⁾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회는 2021년도 결산 시정요구에서 시험장 책임관·관리관 등의 증식비 및 시험 감독수당은 계좌이체 등 현금지급 외의 수단을 통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워 그 집행 방식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1월 8일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험관리원 선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하여 시험장 책임관·관리관 등의 수당 등을 시험 종료 후 디브리인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11월 8일부로 조치완료하였음을 국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치완료 이후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숙출제 시험위원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중 총 5억 5,120만원을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하여, 시정요구 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2021년 시정요구 조치완료 이후 현금지급 내역]

세목	건명	지급액(천원)	지급구분	지급날짜
기타 운영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시험위원 등 수당 지급	551,200	현금지급	2022.12.26.

자료: 법무부

경비 또는 통상적인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②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③ 여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④ 섬·외딴곳·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페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및 ⑤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 가능

3)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④ 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금지급을 통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요구 조치완료 이후에는 요구사항의 취지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3) 업무추진비 카드사용건의 부적정 지급처리 문제(헌법재판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 집행액 중 95.1%인 6억 9,300만원을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면서 해당 카드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매월 2회씩 세부사업·비목별 총액으로 일괄 지급처리하였다.

국회는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의 지급처리에 있어서 예산집행지침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정부구매카드 승인건별로 사용내역을 기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에 대해 카드승인건별로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기재하여 지급처리할 예정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건별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부터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일괄하여 처리하지 않고 건별로 이를 처리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관서 업무경비 카드청구액’ 또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카드청구액’으로 일괄 기재하여 그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서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예시(2022.12.)]

(단위: 원)

지급일자 ¹⁾	세부사업	사용가맹점	건명	지급액
2022.13.10.	본부기본경비	○○호텔	관서업무수행경비 12월 하반기 카드청구액	2,674,000
2022.13.10.	본부기본경비	△△식당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12월 하반기 카드청구액	3,445,000

주: 1) 2022년 12월 집행되었으나, 정부구매페카드 대금의 지급이 다음 해 이루어지는 경우 '2022.13.10.'과 같이 표기됨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관서업무추진비의 지급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재 시 각 사용건별로 그 세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토지대여료 세입예산 정확한 편성 필요(대법원)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토지대여료 세입과목은 대법원 소관 국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징수하려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정확히 추계되지 못하였고, 수납률이 2019년 24.5%, 2020년 16.8%, 2021년 17.4%로 매우 저조하였다.

국회는 토지대여료의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예산액을 정확히 추계하도록 2020년, 2021년 2개년 연속으로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향후 과도한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도록 토지대여료 세입 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대법원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에도 여전히 수납률은 22.1%로 나타났으며,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9억 1,8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여전히 과다한 세입예산액이 편성되고 있다.

최근 2019년 이후 평균 징수결정액이 1억 7,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 6,900만원임을 고려하면, 9억 1,800만원의 세입예산 편성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제대로 된 세입예산 추계가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9년~2023년 토지대여료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2019	791	194	194	24.5
2020	815	156	137	16.8
2021	839	146	146	17.4
2022	908	202	201	22.1
2023	918	-	-	-
평균	854	175	170	20.2

자료: 대법원

토지대여료는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계약(임대차)에 따라 수입이 정해진다. 수납률이 20.2%임을 고려하면 토지 사용계약 시 임대료를 5배로 증액하여야 편성된 세입예산만큼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임대료의 결정은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토지 가격 등의 요소에 변동을 받는 대등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다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액편성하는 정부의 세입예산 편성 관행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토지대여료 세입예산 편성 시 토지 사용계약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 59건으로 시정 10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39건이며, 이 중 3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 40건이며, 조치중 19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 3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 2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사업 등 3건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	0	1	5	7	(2)	11	7	4
국가보훈부	0	0	1	2	9	0	12	6	6
공정거래위원회	0	0	4	2	5	0	11	10	1
금융위원회	0	0	2	3	13	(1)	17	10	7
국민권익위원회	0	0	2	0	3	0	5	5	0
가습기살균제 등 특별조사위원회	0	0	0	0	0	0	0	0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0	0	1	2	0	3	2	1
합계	0	0	10	13	39	(3)	59	40	19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1	0
국가보훈부	1	1	0
금융위원회	1	0	1
합계	3	2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조치의 성과 미흡(공정거래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방식이 2021년 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응답률 상향 효과가 미미하므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미참여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참여 사유, 참여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6종(제조,용역,건설업종/원수급사업자) 총 390개 조사표 항목을 2022년도에는 30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도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원사업자 91.1%, 수급사업자 45%로, 2021년도 응답률 대비 하락하여 성과가 다소 미흡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는 하도급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은 원사업자 91.1%(9,110/10,000), 수급사업자 45.0%(40,475/90,000)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2022년도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은 2021년도 응답률 원사업자 92.8%, 수급사업자 46.0%에 비하여 소폭 하락한 것으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과다 출자의 문제(금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기초자산 공급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출자액 반영 전 지급보증배수(40.2배)가 적정 지급보증배수(40.7배)의 범위 내에 있어 출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예산액 전액을 출자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금이 과다하게 유보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출자예산 편성 시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면밀히 산출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등 출자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재정운용 효율성을 위해 매년 적정 수준을 배당 형태로 간접 환입하고 있고, 출자규모 예측 정교화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2023년 5월말 현재 적정 지급보증배수 재산출 및 보완지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책모기지 공급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공급 목표를 산출하고 출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금융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가 적정 수준 범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추가 출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출자금이 과다하게 집행된 문제가 있다.

2022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배수 현황을 살펴보면, 출자액 반영 후 지급보증배수는 35배로 적정 지급보증배수 하한인 39.4배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⁴⁾ 또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자를 가정한 2022년도 말 현재 예측 지급보증배수 41.9배와의 격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출자액 반영 전 지급보증배수도 37.6배로 적정 지급보증배수(40.7배) 범위 내에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배수 현황 I]

(단위: 억원, 배)

구 분		2007	2008	2009	2012	2013	2015	2018	2019	2021	2022
출자액	정부	500	2,500	4,000	-	2,200	2,000	900	900	500	1,590
	한은	-	-	-	1,350	-	2,000	-	-	-	1,200
	합계	500	2,500	4,000	1,350	2,200	4,000	900	900	500	2,790
예산심사 시 예측보증배수 (출자가정)		37.3	30.6	30.5	-	32.8	46.0	47.9	42.0	40.8	41.9
실제 보증배수		30.8	37.5	29.9	31.0	32.4	38.2	37.9	36.3	39.7	35.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배수 현황 II]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초자산 공급	302,198	232,685	400,521	432,019	317,914	232,113
유동화증권 발행	317,274	248,484	280,911	485,720	365,733	171,982
(출자소요액 반영 전) 지급보증배수(A/B)	41.9	39.0	37.2	40.3	40.2	37.6
지급보증잔액(A)	1,150,551	1,178,087	1,227,197	1,437,213	1,492,524	1,419,239
자기자본(B)	27,478	30,189	32,938	35,698	37,104	37,774
출자소요액 (C)	-	900	900	-	500	2,790 ¹⁾
(당해연도 출자소요액 반영 후) 지급보증배수(A/(B+C))	41.9	37.9	36.3	40.3	39.7	35.0

주: 1) 2022년 정부 출자액(1,590억원) 및 한국은행 출자액(1,200억원) 반영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일시 전액 출자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경기 등 유동화 증권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의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수요에 상응하는 적정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자를 분할 실시하는 출자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행정심판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국민권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2017~2021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이 연례적으로 60일을 초과하고 있고 2021년도의 경우 법정 최장 재결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건수가 4,165건(22.1%)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행정심판 재결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욕설·비방·모욕 등으로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보정 없이 ‘각하’할 수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안이 2023.2.27. 국회에서 의결되어 3.21. 공포·시행되었으며, 답변서 제출지연 기관에 대한 독촉공문 발송, 장기미결사건 점검회의 개최,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도에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행정심판 처리건수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일반사건과 보훈사건의 경우 평균 재결기간이 법정 최장 처리기간인 90일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의 경우 평균 재결기간은 전년 대비 단축되었으나, 법정 처리기간을 도과한 60일 초과 90일 이내 처리건수 비율, 30일의 연장기간을 감안한 법정 최장 처리기간을 도과한 90일 초과 처리건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행정심판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일)

구 분	총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처리기간 내		처리기간 초과
			60일 이내	61~90일	90일 경과
2018	25,153	82.61	15,774 (62.7%)	3,277 (13.0%)	6,102 (24.3%)
2019	21,534	68.76	16,210 (75.3%)	1,723 (8.0%)	3,601 (16.7%)
2020	22,727	88.36	14,303 (62.9%)	2,877 (12.7%)	5,547 (24.4%)
2021	18,873	81.5	13,027 (69.0%)	1,681 (8.9%)	4,165 (22.1%)
2022	21,159	75.83	13,570 (64.1%)	2,677 (12.7%)	4,912 (23.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유형별로 행정심판 처리 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건과 보훈사건의 경우 평균 재결기간이 법정 최장 처리기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2022년도 평균 재결기간이 일반사건⁵⁾은 106.1일, 보훈사건⁶⁾은 176.7일에 달하는 상황이다.

[2018~2022년 사건 유형별 행정심판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일반사건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평균 재결기간
2018	4,912	5,251	195.81	1,304	1,442	140.31	16,827	18,460	45.90
2019	9,258	7,607	111.02	1,292	1,148	109.80	13,526	12,779	39.92
2020	6,762	7,139	157.83	1,328	1,080	188.69	14,277	14,508	46.71
2021	5,497	5,465	147.0	1,134	1,218	187.4	12,598	12,190	41.5
2022	7,658	7,006	106.1	1,197	1,437	176.7	12,614	12,716	47.7

주: 2019년도는 한 명의 청구인으로부터 3,088건의 단순반복적인 행정심판이 접수되어 재결기간은 단축되었으나 그 외 일반사건 처리가 지연되었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5) 보훈사건과 운전면허사건을 제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으로서, 고용노동, 정보공개, 국방, 법무, 국토교통, 각종 시험, 보건복지, 재정금융, 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 6)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나 유족 신청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이다.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사실상 부적법한 청구사건을 각하 처리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사건이 다른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일부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행정심판 재결기간의 전반적인 단축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한정적일 수 있다.⁷⁾⁸⁾

2022년도에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행정심판 처리건수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일반사건과 보훈사건의 경우 평균 재결기간이 법정 최장 처리기간인 90일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미결사건의 점검 및 관리,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7)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2조의2는 타인 비방 등의 내용으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 보정요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2조제5항에 따라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정기간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의 재결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8)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도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40건으로 주의 6건, 제도개선 34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31건이며,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평균배당성향 산정방식 등 3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0	0	0	2	19	0	21	14	7
국세청	0	0	0	0	5	0	5	4	1
관세청	0	0	0	1	3	0	4	3	1
조달청	0	0	0	2	4	0	6	6	0
통계청	0	0	0	1	3	0	4	4	0
합계	0	0	0	6	34	0	40	31	9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평균배당성향 산정방식 개선 미흡(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전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의 평균값은 산술평균기준 40.38%로서 정부의 중기목표(2022~2026년간 40% 유지)를 달성하였

으나, 이는 각 기관별 배당성향의 단순평균으로서 기획재정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배당을 미실시한 기관은 제외하고 평균배당성향을 산정하고 있어 결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 한편, 가중평균(전체 기관의 배당금 합계를 전체 기관의 당기순이익 합계로 나누어 도출) 기준으로는 28.61%여서 목표에 크게 미달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산술평균 기준을 고려하여 정부출자기관의 평균배당성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효율적인 출자수입 관리를 위해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출자기관의 경기대응력 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정부배당수익을 전년 대비 1.1조원 상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재정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계획 및 관리의 지표가 되는 배당성향 산정 시 배당을 미실시한 기관을 여전히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부배당 결과,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로의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9개이며, 총 배당금액은 1조 2,387억원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평균배당성향에 대하여 39.9%로 발표하면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시정요구한 취지는 산술평균 기준을 고려하되 배당을 실시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미실시한 기관까지 고려한 산술평균기준으로 정부배당성향을 제고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1회계연도 결과에 따른 배당성향은 40.38%였으나, 2022회계연도 결과에 따른 2023년 배당성향은 39.9%로 소폭 하락하였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배당실시기관 외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배당금을 납입하지 않는 기관도 고려하여 목표 평균배당성향을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재정사업심층평가 조기 착수 노력 필요(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재정사업심층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보조사업연장평가 등 다른 재정사업 평가와 달리 국회 제출은 물론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재정사업심층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8월 전에는 완료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는 2021년 평가과제 6건을 모두 11월에 착수하여 차년도 4월에 완료하는 등 재정사업심층평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필요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재정사업심층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를 조기 착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21년도 재정사업심층평가 결과를 공개('23.5월)하였고, '22년도 재정사업심층평가 결과도 평가 종료 시 공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심층평가 대상도 조기 선정하여 평가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재정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치 완료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심층평가의 종료를 독려하고, 조기에 심층평가 과제 선정 및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정기화함으로써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례적으로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지연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평가를 2022년 4월까지 완료하였음에도 2022년 재정사업심층평가 신규과제를 2022년 11월 28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선정⁹⁾하였으며 2023년 9월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한 상황이다.

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

[최근 5년 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현황]

연도	평가대상(사업 · 사업군)	평가 수행기관	평가기간
2017	저출산극복지원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017.6.
	국가공간정보정책사업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5.~2017.12.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2018.6.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군	명지대	2017.12.~2018.6.
	농업인력 양성 사업군	농정연구센터	2017.12.~2018.6.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군	한국재정학회	2017.12.~2018.6.
	고용장려금체계개편(청년일자리중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2018.6.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2018.6.
2018	미세먼지 저감대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8.~2018.12.
	BK21플러스	한국재정학회	2018.9.~2018.12.
	모태펀드	금융연구원	2018.9.~2018.12.
	재직자 교육훈련	숙명여대	2018.9.~2018.12.
	R&D출연연운영효율화	한국정책학회	2018.9.~2018.12.
	창업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8.9.~2018.12.
2019	외국인 체류관리사업군	한국노동연구원	2019.6.~2019.11.
	산학연협력사업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6.~2019.11.
	다자개발협력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6.~2019.11.
	실업자재취업 사업군	서울대	2019.6.~2019.11.
	아동돌봄사업군	보건사회연구원	2019.6.~2019.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한국재정학회	2019.6.~2019.11.
2020	국립대재정지원사업군	충북대	2020.3.~2020.9.
	노인의료지원사업군	한림대	2020.3.~2020.10.
	전자정부 지원체계	서울대	2020.3.~2020.12.
	스마트시티	국토연	2020.3.~2020.8.
	고용보험기금 사업군	건국대	2020.12.~2021.6.
	농어업정책보험 사업군	KDI	2020.12.~2021.5.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군	서울대	2020.12.~2021.5.
	정책펀드 사업군	자본시장연구원	2020.12.~2021.6.
2021	어촌뉴딜300	한국정책학회	2021.11~2022.4
	창업지원사업군	경상대	2021.11~2022.4
	직접일자리 사업군	건국대	2021.11~2022.4
	ICT기금 사업군	건국대	2021.11~2022.4
	국가연구시설장비 사업군	카이스트	2021.11~2022.4
	군간부주거지원 사업군	국토연구원	2021.11~2022.4
20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11~2023.9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11~2023.9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11~2023.9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동 협약내용에 따라 2023년 9월에 평가가 종료하고 그 이후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다시 평가일정이 차년도로 이월하게 된다. 이렇게 지연되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져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여전히 미준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수행 중인 심층평가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차년도 과제 선정 및 착수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이를 정기화함으로써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3)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의 개선 조치 미흡(국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중 인별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거소 확인, 재산 조사, 안내·방문 등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2017~2021회계연도 징수금액은 위탁금액 대비 0.6~0.7%에 불과하였다.

국회는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징수금액이 높을수록 위탁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징수 방식을 개선하는 등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고액 징수금액의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징수가능성이 높은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¹⁰⁾하여 징수하고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현장활동을 강화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세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10) 전세보증금 규모, 출입국 횟수, 발견재산 매각 실적, 분납약속 등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관리

국세청의 고액채납자 증점관리에도 불구하고 위탁채납액의 2022년도 징수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위탁수수료를 구조 개편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세채납액 징수위탁 현황 및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8~2021회계연도 징수율(위탁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0.6~0.7%였던 것에 비해 2022년도 징수율은 0.8% 수준으로 위탁징수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징수위탁 현황 및 징수 실적]

(단위: 억원, 건, %)

구 분		연도말 위탁금액	연도말 위탁건수	징수금액 (당년)	징수건수 (당년)	징수율 (연도말기준)	
						금액	건수
2018	~1천만원 미만	2,092	82,205	60	6,186	2.9	7.5
	1천만원~1억원	32,359	365,185	312	24,184	1.0	6.6
	1억원~5억원	26,816	82,526	18	664	0.1	0.8
	5억원 이상~	8	2	-	-	0.0	0.0
	계	61,275	529,918	390	31,034	0.6	5.9
2019	~1천만원 미만	1,802	71,249	64	6,810	3.6	9.6
	1천만원~1억원	29,418	331,553	329	24,452	1.1	7.4
	1억원~5억원	32,180	101,680	35	1,068	0.1	1.1
	5억원 이상~	8	2	-	-	0.0	0.0
	계	63,408	504,484	429	32,330	0.7	6.4
2020	~1천만원 미만	1,239	48,980	58	7,008	4.7	14.3
	1천만원~1억원	23,037	251,133	283	22,304	1.2	8.9
	1억원~5억원	37,195	123,490	56	1,559	0.2	1.3
	5억원 이상~	-	-	-	-	0.0	0.0
	계	61,471	423,603	397	30,871	0.6	7.3
2021	~1천만원 미만	1,404	57,972	72	9,045	5.1	15.6
	1천만원~1억원	29,662	348,285	305	20,979	1.0	6.0
	1억원~5억원	32,201	120,824	59	1,360	0.2	1.1
	5억원 이상~	-	-	-	-	0.0	0.0
	계	63,267	527,081	435	31,384	0.7	6.0
2022	~1천만원 미만	2,144	105,707	233	29,001	10.9	27.4
	1천만원~1억원	26,719	318,922	211	11,673	0.8	3.7
	1억원~5억원	33,656	128,132	33	409	0.1	0.3
	5억원 이상~	-	-	-	-		
	계	62,519	552,761	477	41,083	0.8	7.4

자료: 국세청

또한 2021년도 결산에서 국회는 징수금액이 높을수록 위탁수수료율이 낮아지는 현행의 위탁수수료율 구조를 개편할 것도 시정요구하였는데, 국세청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위탁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3월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황으로, 아직 위탁수수료율의 구조 개편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위탁체납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율 구조 개편을 위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38건으로 시정 3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28건이며, 이 중 4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35건이며, 조치중 3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 등 1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0	0	3	11	28	(4)	38	35	3
합계	0	0	3	11	28	(4)	38	35	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1	0	1
합계	1	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금 과다 개선(교육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1년 60조 337억원이며,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금 적립금은 2018년 4,338억원, 2020년 2조 8,768억원, 2021년 5조 4,04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000억원으로 기금에 적립될 교부금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부금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쓸 곳이 없어 그냥 쌓아두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교육부로 하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기금총괄관리관 및 기금총괄보고서 제도를 신설하여 시·도교육청 내부통제 강화 및 시·도의회외의 외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 적립 규모 적정성 검토, 조성·사용요건 개선, 조례 목적 부합여부 검토, 조례상 용도 중복에 대한 개선 권고 등 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을 적정규모로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전체 교육의 균형 발전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교육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환경 개선 여건과 별개로 증가하는 구조이며,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한 교육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금이 2021년 5조 4,041억 원에서 2022년 21조 3,81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은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기금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기금수는 2017년 9개에서 2022년 55개로 확대되었으며 연도말 적립액은 같은 기간 3,206억 7,800만원에서 21조 3,811억 4,500만원으로 66.7배로 증가하였다.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금은 은행예금¹¹⁾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예금별로 연이자율은 최저 0.6%~최고 5.5% 수준이며, 2022년 총 617억 2,2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¹²⁾

[연도별 시·도교육청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7	9	356,613	35,935	320,678
2018	10	466,881	33,077	433,804
2019	20	1,798,057	82,336	1,715,721
2020	32	2,976,076	81,311	2,894,765
2021	46	6,167,707	763,647	5,404,060
2022	55	22,167,156	786,011	21,381,145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특히, 시·도교육청은 2019년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설을 통하여 기금 적립액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예측오차가 발생한 영향도 있으나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액과 불용액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1) 16개 교육청은 농협을, 1개 교육청은 부산은행을 금고로 선정하였다.

12) 시·도교육청별로 예금상품 및 이자율, 예치 시기 등에 편차가 있어 적립금 규모에 비해 이자수익이 적은 경우도 있다.

(단위: 억원)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적립금	18,003	16,449	11,906	12,801	6,493	7,511	4,552	4,980	29,263
이자수익	86	73	6	17	4	16	17	26	17
교육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적립금	15,174	12,649	10,713	13,509	13,094	14,427	17,864	3,884	213,811
이자수익	81	37	18	42	2	115	49	11	617

자료: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출로 계상되기 때문에, 기금 전출로 특별회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금 전출금은 실제 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기금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2022년말 기준 17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액은 11조 5,845억원, 16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적립액은 8조 8,074억원 규모이다.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9	6	11,828	0	11,828	-	-	-	-
2020	13	23,056	0	23,056	-	-	-	-
2021	14	36,895	6,774	30,121	13	18,721	207	18,514
2022	17	120,564	4,719	115,845	16	90,409	2,335	88,074

주: 1)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2) 2022년은 가결산(2022. 3.) 기준(2023.10. 결산 완료 예정)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로 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6개 기금, 부산 4개 기금, 대구 2개 기금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2019년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 교류협력기금 등 기금 신설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2022년도에는 교육정보화기금 등을 신규로 설치하였다. 2022년말 기금 조성액은 22조 1,672억원이며, 이 중 3.5%(7,860억원)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21조 3,811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었다.

[2022년도 시·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2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교육청	기금명	조성 연도	조성액 (A)	사용액 (B)	현재액	집행률 (B/A)
서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07	15,827	8,515	7,312	53.8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2016	118,594	3,425	115,169	2.9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0	2,971	138	2,833	4.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1,289,791	80,287	1,209,504	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	465,100	0	465,100	0.0
	생태전환교육기금	2022	1,006	588	418	58.4
부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918,889	0	918,889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485,597	0	485,597	0.0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2	500	100	400	20.0
	교육정보화기금	2022	240,000	0	240,000	0.0
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1	490,337	0	490,337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700,270	0	700,270	0.0
인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055,154	229,505	825,649	21.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564,944	110,495	454,449	19.6
광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1,351	0	1,351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446,059	0	446,059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1,925	0	201,925	0.0
대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548,248	0	548,248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839	0	202,839	0.0
울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53,395	0	153,395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301,804	0	301,804	0.0
세종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447,626	0	447,626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50,370	0	50,370	0.0
경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07	27,874	11,135	16,739	39.9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3,614	295	3,319	8.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758,388	0	1,758,388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1,147,829	0	1,147,829	0.0
강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3,286	0	3,286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1,030,662	0	1,030,662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487,498	0	487,498	0.0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	50,000	0	50,000	0.0

(단위: 백만원, %)

교육청	기금명	조성 연도	조성액 (A)	사용액 (B)	현재액	집행률 (B/A)
충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912,901	70,000	842,901	7.7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021	97,187	10,155	87,032	10.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334,978	0	334,978	0.0
충남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2015	79,866	7,255	72,611	9.1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998,726	0	998,726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0	0	0	0.0
전북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1	994	0	994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790,163	0	790,163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559,700	0	559,700	0.0
전남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	2001	8,376	6,830	1,546	81.5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0	303	0	303	0.0
	폐교매각대금관리기금	2020	13,764	0	13,764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870,943	0	870,943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	422,800	0	422,800	0.0
경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441,518	104,400	337,118	23.6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013	282,301	27,595	254,706	9.8
	공무원주택임차기금	2010	5,301	4,587	714	86.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850,144	0	850,144	0.0
경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131,420	68,000	1,063,420	6.0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1	704	0	704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748,151	25,900	722,251	3.5
제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44,077	16,806	227,271	6.9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2021	116,091	0	116,091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45,000	0	45,000	0.0
합 계			22,167,156	786,011	21,381,145	3.5

주: 1.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

2. 2022년말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 기준

자료: 교육부 /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2022년 시·도교육청 기금의 집행률이 3.5%에 불과하고 연도말 누적 적립금이 대폭 증가(2021년 5조 4,041억원 → 2022년 21조 3,811억원)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로 하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22건으로 주의 3건, 제도개선 20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9건이며, 조치중 3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거점지구인프라 구축 사업 등 1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0	2	13	(1)	14	12	2
방송통신위원회	0	0	0	0	5	0	5	5	0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1	2	0	3	2	1
합계	0	0	0	3	20	(1)	22	19	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출연금 교부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3월 25일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3월 31일 '디지털 전환' 사업의 사업비 108억원 전액을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교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출연사업 수행 시 실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출연금을 교부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디지털 전환 지원)은 2021년 추경을 통한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나, 향후 타 사업 예산 교부 시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 말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년 시정요구 대상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거점지구인프라 구축 등 일부 다른 출연사업 중 실집행 일정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실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출연금 교부 및 집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지구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전광역시 둔곡지구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원센터 건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연구개발출연금(360억)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1년말 기본설계 착수 이후 거점지구인프라 구축 대상부지를 국유재산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 검토 등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22년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 및 준공 일정 등이 1년 이상 지연되었다.

[거점지구인프라 구축 추진계획 대비 실제 추진현황]

구 분		당초 계획일정 (2020.7.)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6.)	비고
타당성조사		2019.11.	2019.11.	
기본계획		2020.7.	2020.7.	
기본설계		2021.8.~ <u>2021.12.</u> (4개월)	2021.12.~ <u>2023.3.</u> (1년 3개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등록을 위한 사전검토 및 설계공고 유찰, 설계 과정에서 부지 국유화 추진에 따라 설계기간 연장
실시설계		2022.1.~ <u>2022.5.</u> (5개월)	2023.4.~ <u>2023.7.</u> (3개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6월)
공사입찰 · 계약		2022.5.~2022.8.	2023.8.~2023.10.	
용지 보상	계약금	2022.6.	2022.12.	
	잔금	2023.6.	2023.6.	
착공		<u>2022.9.</u>	<u>2023.10.</u>	
준공		<u>2024.1.</u>	<u>2025.4.</u>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시설계가 2022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공사 입찰 및 계약이 2022년 8월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2022년 예산의 대부분이 9월 이후에 집행 가능하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을 일시에 교부하였고, 결국 교부액의 90% 이상(97억 2,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21~2023년 분기별 예산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예산	교부액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	1,000	1,000	0	0	0	1,000
2022	10,725	10,725	0	0	0	10,725
2023	5,452	0	5,452	0	0	5,452

주: 2023년 54억 5,200만원은 4월에 20억원, 6월말 34억 5,200만원 교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2023년 주관기관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당해연도 교부액	실집행액	당해연도 교부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해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5월말)
1,000	1,000	10,725	1,000	9,725	5,452	9,725	15,177	1,94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2항¹³⁾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점지구인프라 구축 사업은 추진목적이나 성격·내용 등의 측면에서 과제 지원형 연구개발비와 달리 설계·공사 등의 계약 일정에 따라 대금 지급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관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시에 출연금을 교부하기 보다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에도 출연사업 추진 시 실집행 현황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등 출연사업 교부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총 100건으로 시정 5건, 주의 44건, 제도개선 51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90건이며, 조치중 10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등 3건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0	0	3	30	26	0	59	55	4
통일부	0	0	1	12	22	0	35	30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	0	1	2	3	0	6	5	1
합계	0	0	5	44	51	0	100	90	1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집행방식 부적정 문제(외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집행에 있어서 2021년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에 편성된 100억원 중 9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85억 3,300만원은 재외공관에 송금하였다. 소규모 무상원조에 대한 예산편성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으로 편성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외교부이며, 사업계획에 대해 통보받

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예산을 재외공관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는 재외공관에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외교부 예산에 계상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재외공관에 송금하지 않고 직접 집행할 것을 시정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한국국제협력단 현지사무소가 소규모 무상원조에 대한 사업의 집행주체임을 관련 지침에 명시하고, 2023년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을 명시하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외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 집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외교부가 수요를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출연금 집행에 있어서 재외공관으로 송금하는 방식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한국국제협력단이 아닌 외교부에서 수원국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소규모 무상원조의 수요는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이나 각 국가별로 봤을 때 수요 및 집행되는 사업이 일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동CIS 국가의 전체 소규모 무상원조의 수는 지난 4년간 약 15건인데, 중동CIS국가에 속한 타지키스탄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요 및 집행된 사업 건수가 최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 지원을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내역 사업인 중동CIS지역 사업이 2021년 15억원에서 2022년 30억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해당 국가 지원사업이 부진한 것은 현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국제협력단의 현지사무소 역할의 부재가 원인이 될 수 있다.

[2019~2022년 타지키스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운영현황]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접수 사업 수	2	0	1	1
집행 사업 수	2	0	0	1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접근성이 어려운 국가의 원조 소외 완화라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전문성이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요조사, 사업계획수립, 그리고 사업집행까지 주체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통일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22억 1,000만원 중 148억 2,300만원(46.0%)을 집행하고, 173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다.

국회는 향후 지급 시차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점진적 완화에 따른 탈북민 입국 인원 및 하나원 수료 인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2.1~5월 매월 14명, 2022.6~12월 매월 100명이 하나원을 수료한다는 가정하에 2022년 예산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통일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2022년 예산 편성시 국내 입국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집행률이 36.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2022회계연도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80억 500만원 중 102억 6,800만원(36.7%)을 집행하고 177억 3,700만원(63.3%)을 불용하였다.

[2021~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21				2022				2023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예산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불용액	
32,210	14,823	46.0	17,387	28,005	10,268	36.7	17,737	20,981

자료: 통일부

[2014~2022년 입국 인원 및 입·수료 인원]

(단위: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입국인원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입소인원	1,541	1,311	1,528	1,352	1,189	1,167	437	73	59
수료인원	1,735	1,297	1,444	1,367	1,111	1,371	538	87	50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집행액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수, 하나원 입소 및 퇴소 인원 수 등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 변동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북한의 국경폐쇄, 제3국 이동 제한 등이 완화되어 탈북민 입국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탈북 여건, 탈북민 국내입국과 하나원 수료 간 시차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지연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통일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2021년도 예산현액 50억 800만원 중 49억 3,200만원(98.5%)을 집행하고, 7,600만원은 불용하였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된 반면, 강원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미집행되고 이월되어 집행 실적 부진하였다.

국회는 통일부에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강원도·경기도에 2022년도 보조금 잔액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향후 사업의 추진 및 국고보조금 집행상황을 보아가며 교부하기로 하였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통일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강원·충청·경기 통일+센터 신축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전년도 이월액, 사업 공정률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원도의 경우 이월된 보조금 16억 2,500만원 중 2억 2,800만원(14.0%)만 집행되고 2022년 교부금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충남도는 보조금 4억원 전액 이월, 경기도는 보조금 15억원 중 14억 5,700만원(97.8%)이 이월되었다.

[2022회계연도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수행 주체	통일부			사업수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강원	1,625	1,625	813	813	1,625	2,438	228	-	2,210	9.3
충남	400	400	400	400	-	400	-	-	400	-
경기	2,000	2,000	1,500	1,500	-	1,500	43	-	1,457	2.2

자료: 통일부

강원도의 경우 2021년도 교부액 16억 2,500만원(설계비 및 공사비) 전액이 이월되었고 2022년 6월에도 설계 절차가 진행 단계로 이월된 설계비 3억원 외에 공사비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2022년도 공사비 8억 1,300만원을 8월에 교부하여 2021년도에 이어 2022년에도 이월액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충청 센터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충청권 내 타 광역지자체의 재정 부담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심사 절차로 사업 착수가 늦어졌고, 경기 센터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통일부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도 충청·경기권 통일+센터 신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월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12월	합계
충청	400	0	380	0	20	0	0	400
경기	2,000	0	750	0	0	750	0	1,500

자료: 통일부

향후 통일부는 통일+센터 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된 보조금의 불필요한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강원 통일+센터의 신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88건으로 시정 19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31건이며, 이 중 3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64건이며, 조치중 24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군인연금 보전금 잔액 정산 등 3건이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0	0	13	16	19	(2)	46	35	11
병무청	0	0	1	2	5	0	8	5	3
방위사업청	0	0	5	23	6	(1)	33	23	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0	0	0	0	1	0	1	1	0
합계	0	0	19	41	31	(3)	88	64	2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과다 편성된 군인연금 보전금 잔액에 대한 정산 필요(국방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수익금 일부를 수입에 반영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 산정 시 기금운용수익을 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국가보전금이 남을 경우 결산상 잉여금을 책임준비금으로 간주하여 군인연금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국회는 국방부에 향후 군인연금 제도개선방안 논의 시 국가보전금의 잉여금 부분에 대해 다음 국가보전금 편성 시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결산상 잉여금 정산은 책임준비금의 역할에 맞는 수준에 이른 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방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군인연금 보전금 잔액을 결산상 잉여금으로 보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책임준비금의 역할이 가능한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한 이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법」 제45조¹⁴⁾의 보전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의 취지는 군인연금 법정 급여 지출액에 수입이 미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지급 불가 상황 예방을 위해 국가가 부족분만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보전금의 잔액 발생은 단순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그 정확한 군인연금 급여 지급 부족분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

14)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 따라서, 보전금 잔액을 결산산 잉여금으로 보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군인연금법」 제45조의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책임준비금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과다 편성된 보전금 잔액은 지속적으로 군인연금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 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대체역 심사 기간 연장 의결 제한 방안 마련 필요(병무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의 내용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¹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결정이 지연되는 모든 편입신청 건에 대해 연장 의결을 하고 있다.

국회는 대체역 편입신청 결정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연장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심사기간 연장 사유는 2020년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원 초기 많은 신청건수로 인한 심사 적체에 따른 것으로 국회 시정요구 취지에 맞게 대체역 편입 신청자에게 편입 결정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제고를 위해 누리집에 편입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의 문제점

병무청의 조치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화를 통한 연장의결의 제한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시정 요구는 동 법의 단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처리의 법정기간인 90일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화하여 실제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병무청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법정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판단 없이 모두 연장 의결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된 기본 법정처리기간인 90일에 대한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동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90일의 법정심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연장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방위사업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방위사업청은 2021년 자항기뢰 사업은 외부 용역을 감안한 감리비 예산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설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가 자체감리를 실시한 관계로 감리비 예산액을 90% 불용하였다. 국회는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2021년 감리비 예산은 국방시설본부가 자체감리 수행을 결정한 시점보다 앞서 편성되어 부득이하게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방위사업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자항기뢰 사업 관련 시정요구의 대상이 된 3개 사업에 대한 2023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집행현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자항기뢰 사업 관련 시정요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22년도에도 시설사업 관련 건설비(165억 800만원) 상당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81억 3,000만원) 및 불용(32억 7,200만원)하였다.

[2022회계연도 자항기뢰 패키지시설사업의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명	2022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574	6,565	△631	16,508	5,106	8,130	3,272
건설보상비(420-00)	0	0	68	68	68	0	0
공사비(420-03)	10,424	6,535	△699	16,260	5,008	8,099	3,153
감리비(420-04)	119	13	0	132	13	0	119
시설부대비(420-05)	31	17	0	48	17	31	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방위사업청

구체적인 시설공사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자항기뢰 패키지시설사업은 2021년 5월에 공사 계약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구청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021년 연말이 되어서야 공사업체와 계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사 착공이 시작된 것은 계약 이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10월로, 인접한 타 방위사업청 소관 시설사업과 공사현장 중첩으로 진입로 사용이 제한¹⁶⁾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진입로 사용 제한 관련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수의 협조회의(7회)를 추진 결과 인접 시설사업의 진입로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시점에 진입로 임시 사용을 협의하여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 15억원이 집행되었다.

16) 방위사업청은 진입로를 동시에 사용 불가한 사유로 ① 산 중턱을 깎아가며 진입로를 만들어 가면서 저장시설을 건축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② 만약 자항기뢰 시설공사를 위해 진입로 사용 시 인접 시설사업은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진입로 동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인접 시설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발생시켰으므로, 향후 동 시설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138건으로 시정 3건, 주의 78건, 제도개선 62건이며, 이 중 5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18건이며, 조치중 20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클라우드 전환지원사업 등 3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0	0	1	24	30	(4)	51	40	11
경찰청	0	0	1	29	6	0	36	33	3
소방청	0	0	0	7	8	0	15	13	2
인사혁신처	0	0	0	12	2	0	14	14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0	1	5	14	0	20	17	3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0	0	0	1	2	(1)	2	1	1
합계	0	0	3	78	62	(5)	138	118	2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클라우드 전환계획의 적정성 문제(행정안전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행정안전부는 당초 계획하였던 클라우드 전환 대상 430개 정보시스템 중 70.2%인 302개의 시스템만 전환하였는데, 일부 서버의 내용연수나 연계된 타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시스템이 미전환물량 128개 중 72개로 사전 시스템 조사의 부정확성이 사업 집행률의 저조의 주된 원인이었다.

국회는 향후 부적절한 사업 설계로 인한 예산 불용에 유의하고,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확인한 이후 전환가능한 적정물량을 대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전환 가능한 적정 정보시스템 파악·선정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환 가능한 물량을 산정하여 증기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안전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 전환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하여 기존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로드맵은 사실상 그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환추진 계획 로드맵을 폐기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로드맵을 대체하는 신규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인증제 개편에 따라 전환대상 시스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①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실제 전환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운영·관리 중인 행정·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실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②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최신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보시스템 담당자의 역량 등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민간시장에도 충분한 사업자 수 및 기술적 역량이 확보되었는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③ 보안인증제 개편에 따라 기존 클라우드 전환이 불가능하였던 정보시스템이 동 사업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기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과 신규 기술 도입 등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신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의 질 향상 보상금 예산 부정정 편성·집행 문제(경찰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의료의 질 향상 보상금은 전문의 등 의료인력의 의료 실적 및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 경찰병원 의료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경찰청은 진료업무운영관리 사업에 기타운영비(210-16)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국회는 의료의 질 향상 보상금은 그 특성상 수당과 유사·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격려금의 형태로 기타운영비로 편성되고 있고 법령의 근거 없이 매월 보수와 함께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 편성·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령·지침상 근거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2022년부터 ①지급 시기 부정기화(3개월간 평균실적 초과시 지급) 및 ②하위 20% 지급 제외 및 ③일부 기준 미달 시 지급액 삭감(5%) 등 지급기준을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경찰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경찰청의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성과향상격려금(의료의 질 향상 보상금)은 지급 인원·횟수 및 지급액을 고려할 때 격려금이 아닌 의료인력의 보수를 충당하기 위한 성격의 지출로 판단되므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경찰청은 의료의 질 향상 보상금을 기타운영비(210-16)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 그 명칭을 의료성과향상격려금으로 변경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경우 ① 지급 횟수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전공의에 대하여 연 7회 지급이 이루어졌고, ② 지급 금액의 측면에서도 전문의 1인에 대하여 1회당 평균 128만원, 연간 평균 896만원이 지급되었으며, ③ 지급 대상의 측면에서도 사실상 전체 인원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격려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2년 의료성과향상격려금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및 편성 내역			
	총계	전문의	전공의	진료 지원 등
편성	911	715	69	127
		(784천원×76명×12월)	(96천원×60명×12월)	(27천원×393명×12월)
집행	910	673	31	205
		(1,282천원×75명×7회)	(64천원×69명×7회)	(202천원×507명×2회)

자료: 경찰청

따라서 경찰청은 그 성격상 격려금으로 보기 어려운 의료성과향상격려금을 기타운영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수체계 내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대통령선거관리 예산의 집행부진 문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 171억원 중 138억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8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예방단속 내역사업 중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수당·운영 경비 등은 집행률이 53.2%이며 고용률은 57%에 그쳤다.

국회는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향후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고, 집행 부진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예산 2,936억 중 2,86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개선되었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투표 실시 등을 위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였는데, 그 비용에 대한 산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이·전용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소의 운영시간이 본투표의 경우 오후 7시 30분까지, 사전투표 2일차의 경우 18시 전 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등에 한해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일련의 비용은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전용 등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전용을 통해 동 사업에 증액된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용된 예산 545억 6,600만원 중 386억 5,500만원만 그 목적대로 집행되었는데, 일부 항목에서 증액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불용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 산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전용 증액 항목 중 집행률 70% 미만 항목]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	세부내역	이용	전용	편성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사전 투표 관리	특별한시사례금(참관인)	-	1,421	1,421	586	835	41.2
	방역물품 폐기	-	178	178	94	83	53.0
	방역관리요원 식대	-	149	149	13	136	8.8
	농산어촌담당자 식대	-	165	165	6	158	3.8
투표 관리	특별한시사례금(참관인)	-	5,786	5,786	1,490	4,296	25.7
	질서유지요원 급여	-	4,339	4,339	2,170	2,170	50.0
	연장근무수당	-	1,429	1,429	-	1,429	0.0
	투표지 운반봉투	-	137	137	95	43	68.9
	자가진단키트	-	1,300	1,300	785	514	60.4
	방역물품 폐기	-	723	723	334	390	46.1
	확진자 교통지원	-	100	100	18	82	17.8
	방역관리요원 식대	-	440	440	12	428	2.7
개표 관리	자가진단키트	-	213	213	-	213	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전용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였던 항목들의 경우, 연장근무수당 및 방역관리요원 식대 지급 필요 여부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 필요 물품 수량에 대한 파악 미흡 등이 집행부진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82건으로 시정 7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51건이며, 이 중 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73건이며,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등 2건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0	0	7	15	39	(2)	59	55	4
문화재청	0	0	0	11	12	0	23	18	5
합계	0	0	7	26	51	(2)	82	73	9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집행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홍보 및 마케팅·컨설팅 집행 실적도 저조하였다.

국회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지원 및 홍보·마케팅·컨설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확대하여 미개발 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지역별 ‘사업관리카드’ 및 ‘예산집행 관리’를 시행하였고, 사업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¹⁷⁾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¹⁸⁾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교부현액의 54.2%로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자체의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7) 관광자원개발사업 현안점검 시도국장(과장) 회의개최 2회('22.9.20./'22.12.21.), 관광자원개발사업 현장점검 1회('22.9.19.~30.)

18)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4회('22.9.28./'22.10.6./'22.10.7./'22.11.1.~2.), 사업 전문가 컨설팅 4회('22.12.6./'22.12.9./'22.12.13./'23.3.14.), 관광거점도시 공무원 사업성과 점검 연수 1회('23.1.17.~18.)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2022년 계획액 기준 93.7%)을 차지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기준 실집행률은 교부현액의 54.2%로 저조하다.

특히 자본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37.4%로 경상보조사업의 실집행률 64.7%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경상보조	20,000	20,000	15,960	35,960	23,282	12,495	183	64.7
자본보조	11,000	11,000	11,522	22,522	8,431	13,815	276	37.4
합계	31,000	31,000	27,482	58,482	31,713	26,310	459	5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각종 행정절차 진행에 계획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사업 추진 중 변수 발생으로 추가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2021년에도 사업이 지연되어 교부현액의 66.2%(415억 2,100만원 중 274억 8,200만원)가 2022년으로 이월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사업 추진 지연 및 전년도 이월액 우선 집행으로, 2022년에 교부된 예산을 일부만 집행하고 2023년으로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54.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1차 교부금의 집행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를 50%씩 전액 교부하였고 집행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자체별, 지자체 내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1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2)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체계적 추진 필요(문화재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에서 교부액의 60.4%가 이월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사업이 추진된 3개 지자체(목포, 영덕, 익산)의 공통적인 지연 사유는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결과 반영이며, 2개 지자체(영덕, 익산)는 동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회는 관계전문가 자문과 이에 따른 보완 등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2022년 사업 추진 시 지자체 관계자 워크숍, 월별 집행을 모니터링 및 사업집행 독려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평가회의를 통해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문화재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집행실적이 20.5%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서 문화재청은 예산액 55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6개 지자체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74억 3,200만원의 20.5%를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자체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A)	교부일 '22.1.26. '22.5.12.	전년도 이월액(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실집행률 (D/C)
목포	1,205	453	'22.1.26.	521	1,726	866	860	50.2
		752	'22.5.12.					
영덕	1,922	961	'22.1.26.	1,299	3,221	171	3,050	5.3
		961	'22.5.12.					
익산	764	273	'22.1.26.	112	876	456	420	52.1
		491	'22.5.12.					
군산	491	246	'22.1.26.	-	491	1	490	0.2
		245	'22.5.12.					
영주	318	18	'22.1.26.	-	318	28	290	8.8
		300	'22.5.12.					
통영	800	400	'22.1.26.	-	800	0	800	0.0
		400	'22.5.12.					
합계	5,500	5,500		1,932	7,432	1,522	5,910	20.5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지자체별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주요 사유는 관련 기관 또는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 사전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이다.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집행실적 저조 주요 사유]

지자체	사업	집행실적 저조 사유
목포	해안로 시장 전선지중화 및 가로등 설치	· 한국전력공사 설계 등 지연, 지중화 공사 지연에 따른 가로등 설치 지연
	골목길 정비, 경관조명 및 편의시설 설치	· 지역주민 협의, 디자인 계획 협의 등 기간 소요
영덕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옛길 복원 등	· 종합정비계획 수립에('22.10.)따른 자문의견 수렴 및 반영 기간 소요
	전선지중화	· 한전 협의 지연
익산	전선지중화	· 공사비 부족으로 설계만 추진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 관계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군산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 '22년 8월 추경 예산 확보, 사업 추진 관련 협의
영주	등록문화자원 보수정비 등	· 종합정비계획 수립('22.8.) 이후 사업 추진 · 문화재위원 자문, 공공건축 자문, 사업관계자 협의 등
통영	전선지중화	· 지중화사업 승인기간 소요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보조금 교부시 지방비 확보, 사전 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규정²⁰⁾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교부하였다.

특히 영덕은 2022년 10월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문화재청은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2022년 상반기에 편성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총 136건으로 주의 28건, 제도개선 116건이며, 이 중 8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22건이며, 조치중 14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등 6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0	0	0	5	56	(2)	59	53	6
농촌진흥청	0	0	0	3	8	0	11	11	0
산림청	0	0	0	11	13	(3)	21	18	3
해양수산부	0	0	0	7	30	(3)	34	30	4
해양경찰청	0	0	0	2	9	0	11	10	1
합계	0	0	0	28	116	(8)	136	122	1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집행 저조(농림축산식품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농업분야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빈집·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600개소)을 신규로 추진하였으

나, 연말 실적행률이 9%에 불과하였다.

국회는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점형 기숙사,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주택 조성 등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등 주거환경 개선 대책으로 2022년~2023년 간 전국 10개 시·군(거점형 2개소, 마을형 8개소)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유형으로 선정된 지역거점형과 마을공동형 모두 사업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2022년도에 국비 42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1억 4,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3.5%로 나타났고, 집행액을 제외한 예산 40억 5,500만원은 모두 차년도로 이월되어 이월액 비중은 96.5%로 나타났다.

국비는 1차(2022.2.23.), 2차(2022.5.26.)에 걸쳐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역별로 집행액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 지역 중 집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남 무안군의 집행률이 17.3%로 나타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전액 이월된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처럼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당초 부지로 선정되었던 지역이 민원으로 인해 변경되면서 건립 계획 단계에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 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 예산 집행이 곤란하였다.

[2022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지자체별 실적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유형	22년 농림부 교부				사업시행주체				
		1차		2차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전남해남	거점형	'22.2.23.	300	'22.5.26.	300	600	6	594	0	1.0
경북영양		'22.2.23.	300	'22.5.26.	300	600	43	557	0	7.2
충남부여	마을형	'22.2.23.	187.5	'22.5.26.	187.5	375	5	370	0	1.3
충남청양		'22.2.23.	187.5	'22.5.26.	187.5	375	10	365	0	2.7
전북진안		'22.2.23.	187.5	'22.5.26.	187.5	375	16	359	0	4.3
전북고창		'22.2.23.	187.5	'22.5.26.	187.5	375	0	375	0	0
전남담양		'22.2.23.	187.5	'22.5.26.	187.5	375	0	375	0	0
전남영암		'22.2.23.	187.5	'22.5.26.	187.5	375	0	375	0	0
전남무안		'22.2.23.	187.5	'22.5.26.	187.5	375	65	310	0	17.3
경남거창		'22.2.23.	187.5	'22.5.26.	187.5	375	0	375	0	0
총 계			2,100		2,100	4,200	145	4,055	0	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농촌 일손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코로나 19 이후 제한된 외국인 입국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의 숙소 마련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강화 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2)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농림축산식품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예산현액 264억 2,600만원 중 251억 2,100만원을 이월하여 실적행률은 4.9%로 그쳤고, 이월액이 2019년 78억 7,000만원, 2020년 160억 5,1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인 예산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였다.

국회는 연례적인 이월 및 집행부진이 최소화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사업초기 2년간은 사업비의 10% 수준으로 인허가 소요 비용만 편성되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지자체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여 보조사업비를 교부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2022년도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기준 실집행률이 18.2%로 나타나고 83억 2,800만원이 이월, 143억 7,4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이월·불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조사업비는 전액 교부되고 있다.

2022년도 사업비는 대부분 인허가 지연 또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특히 강원도 강릉과 평창의 경우 사업 포기 및 환경영향평가 미보완으로 축산단지 건립이 중단되었으며 경남 합천도 사업 포기 예정인 상황이다.

[2019~2022년 스마트축산단지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9	7,875	0	7,875	751	7,124	0	-
2020	14,625	7,124	21,749	4,036	17,713	0	-
2021	10,375	17,713	28,088	227	26,174	1,688	-
2022	1,578	26,174	27,752	5,050	8,328	14,374	- 강원 강릉, 평창 사업 포기 - 경남 합천 사업포기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사업 포기 예정인 경남 합천에도 2022년도에 국비가 교부되어 전액 이월되었으며, 타 지자체 또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중 대부분을 이월하였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농림부 교부액	사업시행주체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충남 당진	528	2,925	3,453	2,425	1,028	0
경남 고성	500	5,750	6,250	2,625	3,625	0
경남 합천	550	2,625	3,175	0	3,175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지역특화작목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미반영 문제(농촌진흥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특화작목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2020년 지역 수요와 전략에 기반하여 전국 도(道)에 69개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였는데, 한정된 사업비로 인해 2021년 18작목, 2022년 36작목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국회는 아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33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2023년 예산 편성 시 지역특화작목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18.5억원(11개 지역특화작목)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농촌진흥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3년도 예산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증액요구가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이 종전과 동일하게 69개 중 36개 작목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18개 작목을 육성지원하다가 2022년 국비와 지방비 비율변경(국비100%→국비50%)으로 대상작목을 확대하여 총 36작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정된 69개 작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33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비 반영을 위한 노력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2022년도와 동일하게 36개 작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2023년도 지역특화작목 선정 현황]

지역	작목명
경기도	선인장/다육식물, 버섯, 콩(장류), 곤충(천적, 애완), 장미, 가지, 상추
강원도	옥수수, 산채(더덕, 산마늘), 감자, 참당귀, 파프리카(여름작형), 토마토(원숙)
충청북도	포도(와인), 대추, 마늘, 곤충(사료), 수박(중소형과), 옥수수(찰옥수수), 사과(중만생), 복숭아(중소형),
충청남도	인삼, 구기자, 생강, 국화(절화), 토마토(방울토마토), 딸기, 프리지아, 곤충(약용)
전라북도	수박(씨없는 수박), 천마, 파프리카(대형과), 곤충(치유), 허브, 산채, 블루베리, 고구마
전라남도	유자, 흑염소, 차/커피, 무화과, 참깨, 양파(조생종), 양봉, 곤충(식용)
경상북도	참외, 복숭아(수출형), 산약(마), 고추, 인삼(시설), 뽕은감, 오미자, 거베라
경상남도	양파(중만생종), 곤충(가공, 기능성), 단감, 망고(애플망고), 파프리카(중소형과), 국화(분화), 사과, 도라지
제주도	당근/비트, 메밀, 키위, 브로콜리, 감자, 양배추, 콩(나물콩)

주: 굵은 글씨는 2022년, 2023년 집중육성지원작목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대상 작목임
자료: 농촌진흥청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지원 작목 확대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사업의 지연 문제(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내수면자원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 일정(2016년~2019년)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2022년 8월 예정된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는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사업의 건축공사 착공에 조속히 돌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가 2022년 12월 20일에 착공승인이 되었으므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사업은 2021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보조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사업의 예산액은 20억원으로 이 가운데 5억 2,900만원이 집행되어 해양수산부 예산액 대비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26.5%이고,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50.0%이다. 동 사업은 2021년도에 감리 선정 방식에 대한 사업자와 조달청 간 이견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면서 5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2년도에도 건축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어 연말에야 착공승인이 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보조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2년간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연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내수면 수산물유통 판매센터	전남	2021	1,058	1,058	529	529	1,628	2,157	1,628	529	75.5
	전남	2022	2,000	2,000	529	529	529	1,058	529	529	50.0

자료: 해양수산부

(5)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저조(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년도 전체 어선거래 9,415건 대비 어선거래시스템에 등록된 매물은 317건 이고, 이를 이용한 중개 계약 건수는 19건에 불과하였다.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어선거래시스템에 따른 거래건수는 2018~2022년 평균 0.13%이고, 전체 어선거래 건수 대비 등록매물 건수 비중 역시 2018~ 2022년 평균 2.87%로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는 어선거래시스템 운영을 고령화된 어촌의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거래 후 공공 영역에서 선박하자 보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므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어선거래시스템은 2022년도에 동 시스템에 등록된 어선 매물과 동 시스템을 통한 어선중개 계약건수가 저조하고, 시스템 접속 및 회원 로그인 건수 또한 해마다 감소하는 등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도 전체 어선거래는 8,136건인데, 어선거래시스템에 등록된 매물은 총 357건이고, 이를 이용한 중개 계약 건수는 14건(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2020~2022년) 동 시스템 접속 현황을 보면, 접속건수의 경우 2020년 22만 4,996건에서 2022년 7만 9,012건으로 감소하였고, 회원 로그인 건수 또한 2020년 1만 8,197건에서 2022년 1만 7,449건으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시스템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 어선거래시스템 접속 등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접속	224,996	76,633	79,012
로그인 ¹⁾	18,197	18,192	17,449

주: 1) 어선거래시스템에 로그인한 회원(일반회원, 중개업자) 수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어선거래 주체들을 대상으로 동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어선중개업제도가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변상금 등 세입과목의 수납률 저조(해양경찰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2021회계연도 세입 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항목은 변상금(21.2%), 과태료(56.9%), 가산금(12.5%) 등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국회는 해양경찰청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저조한 수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권 회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수납 채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미수납 채권 회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22.9.19)하였고, 본청 및 소속기관 이행사항 점검('22.12),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4,9,12월) 등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경찰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2022회계연도에 변상금 등 주요 세입과목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미수납 채권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징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세입과목 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한 세입과목을 보면, 벌금·과태료·과징금·징계부과금 과목의 수납률이 63.3%, 변상금이 19.3%, 위약금 및 가산금이 73.4%, 기타경상이전수입이 88.7%이다. 특히 이 가운데 변상금의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할 경우 국가재정에 결손을 가져올 뿐 아니라,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변상금 등 채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재산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세입 중 수납률이 저조한 세입과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244	5,244	6,471	4,027	2,402	42	62.2
벌금·과태료·과징금·징계부과금	268	268	431	273	146	12	63.3
변상금	1,619	1,619	2,680	518	2,134	28	19.3
위약금 및 가산금	393	393	188	138	48	2	73.4
기타경상이전수입	1,116	1,116	655	581	74	-	88.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129건으로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119건이며, 이중 3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 118건이며, 조치중 11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3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 2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 등 4건이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자원부	0	0	1	7	57	(2)	63	58	5
특허청	0	0	0	1	12	0	13	11	2
중소벤처기업부	0	0	1	3	50	(1)	53	49	4
합계	0	0	2	11	119	(3)	129	118	1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자원부	2	1	1
중소벤처기업부	1	1	0
합계	3	2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가정용스마트플랫폼구축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및 실행 지연(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동 사업은 보급 대상인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시스템 도입을 계약한 세대가 2022년 6월말 기준 목표 대비 27.2%, 설치를 완료한 세대가 9.3%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보급 추진 사업의 서비스 가입율이 0.51%로 저조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고, 2021년도 실행률이 38.3%로 저조하며, 연례적인 사업기간 연장으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여 사업성과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국회는 향후 실행률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사업기간 연장을 지양하기 위해 조속히 AMI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서비스 가입률을 높이고 AM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일점검 등 엄격한 사업 관리 및 홍보 확대 등을 통해 2022년 6월말 대비 12월말 구축률 500%를 달성하였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경과에 맞춰 사업비를 분할 집행하였으며, 실행 이월된 2021년 예산의 2022년 실행률을 76.24%로 제고하였으며, 서비스 가입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수 지자체 및 유관기관 MOU 확대, 공공기관 고지서 활용 광고 추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은 2022년에도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되고, AMI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실행 실적 저조한 문제가 나타났다.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은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2022년 5월 60만호를 1차 공고하였으며, 2022년 추경 이후 잔여물량 6.6만호에 대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2022년 10월 6

일에 사업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례 유찰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2월 6일 다시 사업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2022년도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현황]

사업	변경일자	당초 사업기간	변경 사업기간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2022.10.06	2022.01.01.~2022.12.31	2022.01.01.~2023.06.30.
	2023.02.06	2022.01.01.~2023.06.30.	2022.01.01.2023.12.3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동 사업에서는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3개 사업수행기관이 AMI를 보급하고 있으며, 총 60만호 목표물량 중 계약물량은 29.6만호, 교부된 정부보조금 570억원 중 집행액은 285억원이다.

[2022년 AMI 보급 실적]

(단위: 호, 백만원)

연도	사업자 (시행기관)	목표물량	계약물량	AMI 설치물량	정부 보조금	2022년 12월말 총보조금 집행액	2023년 4월말 총보조금 집행액
2022	A사	300,000	108,588	52,264	28,500	8,550	14,250
	B사	200,000	159,423	-	19,000	5,700	9,500
	C사	100,000	28,599	8,539	9,500	2,850	4,750
	합계	600,000	296,610	60,803	57,000	17,100	28,5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용스마트플랫폼 사업은 2022년에 당초 목표한 AMI 보급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하여 나타났다. 또한 2023년 4월 기준 AIM 보급 계약 실적이 저조하여 2023년 사업기간 중 목표물량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동 사업은 2022년에 종료된 사업으로 향후 국회의 결산심사에서 AMI 보급실적 달성도 및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산업

통상자원부는 2022년에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의 실집행 및 AMI 보급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은 지자체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2021년에 25개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개 지자체만 사업에 지원하여 참여하였고, 연내 실집행 실적이 없었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정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월에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또는 우수 운영 지자체에 대해 에너지전환 관련 국고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에너지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유인체계를 마련하였고, 2022년 2월에 「지역에너지센터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역에너지센터 확산 조치를 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신규 수요 부족 및 기존 사업 참여 지자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2022년에 예산 불용이 크게 발생하였다.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은 2022년 계획액 대비 지자체의 신규 수요가 부족하고, 2021년에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하던 지자체의 사업포기로 지원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2022년 계획액 45억원 중 29억 7,300만원(66.1%)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지역에너지센터지원	5,000	4,500	0	0	4,500	686	841	2,97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2년에 25개 신규 지역에너지센터와 2021년에 운영을 시작한 20개 지역에너지센터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었다. 신규 지역에너지센터 선정을 위한 2022년 8월 1차 공고에서는 3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고, 2022년 9월 2차 공고에서는 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2021년에 지원한 20개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센터 중 7개가 2022년에 사업을 포기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2022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지원센터수 (협약기간)	2022 지원센터수 (협약기간)	2022 집행액	2022 이월액
계속지원 대상	· 6개 (2021.7~2022.10)	· 6개(2022.11~2023.10)	550	0
	· 7개 (2021.8~2023.11)	· 7개(2022.12~2023.11)	0	541
	· 7개 (2021.8~2023.11)	사업포기	0	0
신규지원 대상	-	· 2개 (2022.11~2023.10)	136	0
		· 3개 (2022.12~2023.11)	0	300
합 계			686	84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자체의 신규 수요 부족과 기존 사업 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에너지센터를 통해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에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지자체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중소벤처기업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은 △2조 4,725억 원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8.6%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자체수입 비중이 8.9%로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중소기업부에 대해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여유자금을 연금투자물에 위탁하여 2.39% 수익을 달성하였고,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여유자금을 연금투자물에 위탁하여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므로 시정조치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도에도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일반회계전입금이 아닌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었다.

2020년 이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경상비 지출 사업을 추진하고, 공자기금 예수금으로는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시행해왔다. 즉, 공자기금 예수금을 재원으로 민간에 대한 융자를 시행하고, 향후에 회수할 융자사업 원리금으로 공자기금 예수금을 상환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중소기업부는 2021~2022년간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과 같이 일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일반회계 전입금뿐만 아니라 공자기금 예수금도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공자기금 예수금 증액으로 부채가 증가하면서, 재무결산결과 2022년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순자산은 △5조 2,046억원, 자산대

비 부채비율은 136.2%로 나타나 자산보다 부채가 크며, 2015년 기금 설치 이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즉, 2022년에도 공자기금 예수금을 재원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었으므로, 해당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상태: 2015~2022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산(A)	1.55	3.20	5.07	6.51	7.44	10.12	13.31	14.38
부채(B)	1.61	3.31	5.11	6.49	7.52	10.34	15.79	19.59
순자산(A-B)	△0.06	△0.11	△0.04	0.02	△0.08	△0.23	△2.47	△5.20
부채비율(B/A)	103.8	103.4	100.8	99.7	101.1	102.2	118.6	136.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운용 필요(특허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사업비를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을 계획적인 적립기준 없이 손실보전 준비금으로 집행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국회는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손실보전 준비금 적립기준 미비 등에 대해 향후 예측 가능한 손실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손실보전 준비금 적립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명확한 적립기준을 마련하며, 가입자 확보활동 비용의 실집행률 제고 등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손실보전 준비금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발의, 2021.4.26)이 산자위 법안 심사 중이고, 손실보전 준비금 명확한 적립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가입자 확보 활동 예산 등 사업비 예산을 95% 이상 집행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특허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식공제사업의 손실보전 준비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준비금 적립근거 마련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준비금의 적립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등의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지식공제사업이 손실보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적정 금액에 관한 기준 등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되어 있어 손실보전 준비금 적립기준 근거가 완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식공제사업의 손실보전 준비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3)」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상 적립근거는 마련되었다. 그런데 개정법²¹⁾은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특허청은 향후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하여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정요구사항은 손실보전금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비 집행잔액을 그대로 적립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립기준에 관한 시행령 및 고시 등이 완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허청은 손실보전금 적립기준에 관한 「지식재산공제 준비금 적립근거 및 기준연구」를 완료하였다는 입장이나, 연구용역 결과 외에도 사업여건·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손실보전적립금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의 성격을 은행업 또는 보험업으로 판단할 것인지, 예금 중 일부를 지급여력금액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적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성격·방식 외에도 회원 부금 가입 현황, 대출 현황 및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 「발명진흥법」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이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적립금을 산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 안정화(자본잠식 해소 등) 이후 지급여력비율의 산출기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즉, 손실보전 준비금 적립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11건으로 시정 3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89건이며, 이 중 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88건이며, 조치중 23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4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 3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 등 3건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0	0	3	19	73	(6)	89	74	15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0	1	8	0	9	7	2
질병관리청	0	0	0	6	8	(1)	13	7	6
합계	0	0	3	26	89	(7)	111	88	2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3	2	1
질병관리청	1	1	0
합계	4	3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예산 연례적 부족 문제(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가산급여는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많아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였다. 예산 부족분은 2018년 3,500만원에서 2022년 74억 4,800만원으로 200배 가량 증가하여 과소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2022년 가산급여 예산편성 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편성액(A)	1,264	2,066	2,066	4,649	9,005
집행액(B)	1,299	3,136	4,328	9,648	16,453
예산 부족분(B-A)	35	1,070	2,262	4,999	7,448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급 인원 및 평균 이용시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액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확대하여 2023년 가산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141.5% 확대(90억→ 219억원)하여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가산급여는 예산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200배 가량 증가한 바, 현실적인 추계방식을 설정하고 수요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산급여가 반복적으로 과소계상 되는 사유는 가산급여 지급 인원 및 지원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은 과거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2020년 가산급여 지급지원은 2,0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2021년 및 2022년에 각 1,000명씩 추가하였으나 실제 지급 인원은 예산 편성 기준을 초과하였다. 또한 2023년 6월 기준 예산 편성 기준 대비 실제 지급인원이 3,000명 가량 많아 차이는 더욱 커졌다.

또한 2018~2021년 가산급여 지원 시간은 128.5시간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2016년 가산급여 시행 시 지원 대상자의 전년도 평균 활동 지원 시간이며, 실제 지원 시간은 이를 초과하였다. 2022년 및 2023년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실제 평균 이용시간이 각각 35.4%, 2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3년 가산급여 지급 인원 및 지원 시간 현황]

(단위: 명, 시간)

구분	가산급여 지급 인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예산편성	지원내역 (실제 지급인원)	예산편성	지원내역 (평균 이용시간)
2018	2,000	2,103	128.5	148.0
2019	2,000	2,600	128.5	169.9
2020	2,000	3,398	128.5	140
2021	3,000	3,778	128.5	151.5
2022	4,000	4,808	140	189.5
2023	6,000	9,184	151.5	194.6

주: 2023년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가산급여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확대 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2023년 6월 기준 계획한 가산급여 인원 및 지원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예산 부족이 예상²²⁾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가산급여 지급 인원 및 이용 시간의 추세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과소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추계방식을 설정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2) 2023년도 5월말 기준 가산급여는 본예산 219억 2,500만원 대비 실집행액 176억 8,800만원으로 실 집행률은 80.6% 수준이다.

(2)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 관리 등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 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내역사업 중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계획액 62억 8,300만원 중 5억 2,000만원만 교부되고 57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계획액 17억 1,700만원이 전액 불용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에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2022년 8월 완료되었고,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설계 공모 절차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2년 편성된 예산(58억원)은 이월이 불가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건축기획 심의절차 완료(2022.12월) 후 2023년 4월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설계 착수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의 행정 절차 소요, 보조금 교부 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2014년 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한 이래, 사업부지 변경 및 대체부지 확보 등의 과정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관련 예

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유상관리전환 협의에 따른 부지대금 2,100억원을 제외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및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등의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내역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으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등 총 6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중 60억 7,500만원을 사업시행주체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교부하였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2억 1,200만원 중 1억 8,200만원만을 집행하고 59억 2,4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²³⁾

[2022회계연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6,283	6,283	6,075	6,075	137	6,212	182	5,924	106
설계비	6,003	6,003	6,003	6,003	137	6,140	181	5,853	106
시설부대비	280	280	72	72	0	72	1	71	0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1,717	1,717	0	0	0	0	0	0	0
설계비	1,626	1,626	0	0	0	0	0	0	0
시설부대비	91	91	0	0	0	0	0	0	0
을지로부지 감정평가 등	800	800	97	-	-	-	-	-	-

주: '국동공병단 부지 매입' 내역사업의 집행 내역은 제외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23) 참고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22.12.),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에만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중앙감염병전문원에 대해서는故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 측에서 기부한 5,000억원을 활용하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설계비 등으로 편성된 17억 1,7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또한, '을지로부지 감정평가 등'의 경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을지로 부지)의 매각대금을 새로운 부지(미 공병단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22년 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그 결과를 1년 내에만 활용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감정평가 예산 중 일부(9,700만원)를 을지로부지 매각전략 수립 용역에 활용하고 나머지 7억 300만원은 불용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2년 5월 25일 보조금을 1차 교부하였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12월 16일 보조금을 2차 교부하는 등 관련 예산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⁴⁾

[2022회계연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건명	지급액	지급일자
1차 교부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1차) 지출요청	150	2022-05-25
2차 교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2차)	5,925	2022-12-1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총사업비가 확정된 후 2023년 3월 22일부터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설계 업체 선정 완료, 202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4월부터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나, 사업 대상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는 반환 미군기지로, 문화재 조사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정화 등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22년 설계비로 편성된 예산 불용 시 2023년 예산으로는 설계추진이 곤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교부·이월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3년 예산에도 설계비(12억 6,900만원)가 편성되어 있어 설계 용역 계약 추진이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질병관리청 R&D 사업(질병관리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보건의로 분야 R&D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은 실제 R&D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과제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다수의 과제가 연내에 종료되지 못하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사업 공고,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과제에 대한 예산을 12개월분으로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바, 국회는 질병관리청 소관 R&D 사업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필요한 행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2023년도 신규 연구과제부터 과제 공고·선정평가 등 행정 소요기간(약 3개월)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을 조정하였고, 연내에 실행 가능한 과업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방안²⁵⁾을 마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질병관리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신규 R&D사업 추진 시 연구과제 협약 준비기간 및 과제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예산 집행 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신규 추진한 R&D 사업의 세부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기간(단년도 또는 다년도 과제)이나 협약 시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대부분의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5) 연구기획과-1962(2022.9.21.), “2023년도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RD) 신규 연구과제 추진계획”

[2022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신규 R&D사업 과제 현황]

세부사업명	연구 과제수	연구 수행방식 기준		총 연구기간 기준		예산 편성상 과제 기간
		외부용역	직접수행	단년도	다년도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11	5	6	3	8	12개월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R&D)	31	18	13	8	23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사업(R&D)	20	10	10	2	18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R&D)	13	10	3	9	4	
정책연구개발(R&D)	10	10	0	10	0	
감염병연구 국제협력 기반구축 (R&D)	1	1	0	1	0	9개월
신변종감염병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R&D)	7	7	0	0	7	9개월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R&D)	1	1	0	0	1	7개월
합계	94	62	32	33	61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질병관리청이 2022년에 신규 추진한 연구과제 중 외부 연구기관과 협약 외부 용역을 통해 추진한 총 62개 연구과제 중 1월에 협약이 체결되어 예산 편성상 과제 기간인 12개월을 수행한 연구는 단 1개 과제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3월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15개 과제는 하반기가 되어서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신규 R&D사업의 협약 체결 시기별 현황]

구분	합계	상반기 협약 체결				하반기 협약체결
		소계	1월 협약체결	2월 협약체결	3~6월 협약체결	
단년도 과제	33	21	1	3	17	12
다년도 과제	29	26	0	1	25	3
합계	62	47	1	4	42	15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질병관리청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 R&D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관련 예산의 집행 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져 추후 R&D 사업의 예산 흐름 파악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산 시점에서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3년 예산 편성 시에도 신규 R&D사업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신규 R&D사업 추진 시, 연구과제 협약 준비기간 및 과제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예산 집행 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159건으로 시정 4건, 주의 74건, 제도개선 91건이며, 이 중 10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22건이며, 조치중 37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등 3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환경부	0	0	4	35	40	(9)	70	53	17
기상청	0	0	0	10	7	0	17	10	7
고용노동부	0	0	0	29	44	(1)	72	59	13
합계	0	0	4	74	91	(10)	159	122	3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의 예산 규모 조정(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도심 건설현장의 경유굴착기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전기굴착기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고보조율 50%로, 대당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내역사업의 예산 40억원 중 타 세부사업으로 18억원을 이용하였음에도, 실적행률이 10.6%에 불과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의 실질적인 수요나 사업추진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급 계획 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조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2021년 대비 50%를 감액 편성(40억원 → 20억원)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22년도 사업 예산 규모를 조정하였음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금액 중 일부(6억 5,000만원)를 이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실적행률이 22%에 불과하는 등 실적행 부진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도에 이용액 6억 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5,0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는데, 그 중 22%에 해당하는 3억 7,900만원만 실적행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2020~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지자체						
	본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	600	300	10.0
2021	4,000	2,200	2,200	100.0	2,200	600	2,800	298	368	2,134	10.6
2022	2,000	1,350	1,350	100.0	1,350	368	1,718	379	10	1,329	22.1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전기굴착기의 상용화 및 보급이 초기단계에 있어 구매의사를 밝혔던 실사용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1년에도 동일한 사유를 들어 실집행 부진 사유를 설명하였는데, 계속해서 사업 추진 여건이 수요를 제고하기에 안정화되지 않음에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인다.²⁶⁾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계속하여 실집행이 부진함에도 일부 지자체에는 교부차수를 나누지 않고 1차례에 전액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한 경우에도 실제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교부한 문제가 있다.

[2022년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교부금액							실집행 금액
	1차(3.16.)	2차(6.10.)	3차(10.17.)	4차(10.31.)	5차(11.14.)	합계	비고	
울산	40	-	-	-	-	40	1차례 교부	39
경기	100	-	50	-	30	180		107
강원	40	-	-	-	20	60		9
충북	50	-	-	50	-	100		0
충남	100	-	100	-	-	200		33
전북	-	200	-	-	-	200	1차례 교부	27
전남	-	-	-	140	-	140	1차례 교부	28
경북	100	-	-	80	-	180		10
경남	120	70	60	-	-	250		9

자료: 환경부

26) 다만, 환경부는 '22년 수요조사('21.6월, 건설기계협동조합 등) 결과를 통해 698대 구매 수요를 확인하였고, 전기굴착기 보급 초기임을 고려해 200대 수준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요자의 구매 보류 등으로 예상보다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사에서 전기굴착기를 출시할 예정이며, 2023년 조기폐차 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향후, 환경부는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수요, 지자체 실집행 금액, 전기굴착기 신규 출시일정 등 사업 추진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집행 관리 철저(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은 승용·버스·트럭 등 수소연료전지차의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 부진의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소버스의 집행실적(45.8%)이 저조하므로, 국회는 차종, 충전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정도 등을 고려한 실제 수소차 수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비 확보여부와 수소차 출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2022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수소승용차 지원 예산을 감액하였고, 지방비 확보 여부 및 기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 실적을 점검한 후 매월 국비를 분할 교부하고 있으며, 생산현황 점검 및 독려를 위해 제작사 현장 방문 및 수시협의를 노력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수소승용차, 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전 지원 차종의 보급 실적 부진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고, 수소버스의 집행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45.8%→36.3%²⁷⁾)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전년도 시정요구에서 제시한 실집행률 수치는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이었으나,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36.3% 해당

환경부는 2022년도에 수소승용차 2만 7,650대, 버스 340대, 화물차 6대, 청소차 4대 보급을 위해 본예산 6,795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서 구매수요 저조 및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인한 생산 지연 등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10,000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예산을 4,545억 5백만원으로 조정하였다.

각 지원 차종별 실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회계연도 수소차 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추경(a)	교부액	실행(b)	실행률(b/a)
수소승용차	622,125	397,125	244,823	226,489	57.0
수소버스	53,000	53,000	37,700	17,008	32.1
수소화물차	1,500	1,500	1,250	250	16.7
수소청소차	2,880	2,880	5,040	0	0.0
합계	679,505	454,505	288,813	243,748	53.5

주: 1. 실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중 지자체가 실행한 금액이다.

2. 실행률을 추경금액 대비 산출한 것은, 환경부가 제2회 추경에서 2022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자료: 환경부

먼저, 수소승용차의 경우 본예산으로 6,22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3,971억원(△2,250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지자체에는 추경예산의 61.6%에 해당하는 2,448억 2,300만원만 교부하였다. 지자체 실행금액은 2,264억 8,900만원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추경예산 대비 57.0%에 불과한 실적이다.

수소버스의 경우 본예산 530억원 중 71.1%에 해당하는 377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고, 지자체 실행금액은 170억원(실행률 32.1%)에 해당하였다.

수소화물차의 경우 본예산 15억원 중 12억 5,0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2억 5,000만원(실행률 16.7%)만 실행되었다.

수소청소차의 경우 본예산은 2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급물량을 상향하여 지자체에 50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지자체 실행금액은 0에 해당하였다.

환경부는 승용·승합·화물 등 각 차종별 단일차종으로 인해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차량 출시 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보급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는 전년도 집행부진 사유로 밝힌 내용과 동일한 사유이며, 2021년도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결산 결과 동일한 실집행 부진 문제(수소버스는 집행실적이 36.3%²⁸⁾로 전년 대비 하락)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은 매년 편성된 예산 대비 지자체에 교부하지 못하고 불용하는 금액 및 지자체 단위의 불용금액이 상당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추경 예산 기준 44.6%에 해당하는 2,027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집행 부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수소버스, 화물차 및 청소차의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하였는데, 연례적인 대규모 불용금액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유발하므로, 향후 환경부는 차량 출시 일정, 충전인프라 구축현황²⁹⁾, 소비자 구매수요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물량을 편성하고, 불용금액이 대규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효과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경으로 1,085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목표를 상향(40만명→45만명)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34만 8,647명(77.5%)으로 본예산 목표 지원인원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며, 참여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취업지원 전담팀 운영,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 취업역량평가 고도화, 사업체계화 등을 실시하여 개선한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28) 전년도 시정요구에서 제시한 실집행률 수치는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이었는바,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36.3% 해당

29) 2022년 12월 기준 수소충전소 전국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총 229기(승용충전소는 122기, 상용충전소 38기, 연구용 등 19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주요 내역사업인 I유형 및 II유형 사업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고, 조치결과로 조기취업시 잔여구축수당 50% 지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은 타 수당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역사업인 I유형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조 2,054억 2,900만원 중 7,244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4,809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다. II유형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현액 1,739억 4,000만원 중 966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772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162억 7,000만원 중 615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546억 7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반회계)	1,496,473	1,496,351	40	-	1,496,391	883,377	160	612,854
I 유형	1,205,551	1,205,429	-	-	1,205,429	724,416	50	480,963
II 유형	173,940	173,940	-	-	173,940	96,663	-	77,277
일경험프로그램	116,230	116,230	40	-	116,270	61,553	110	54,60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3개 내역사업(I유형, II유형, 일경험프로그램) 모두 2022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집행이 부진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사업에서의 실적 저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2021년 사업 실시 이래 주요 3개 내역사업에서 모두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 대비 저조한 지원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년 인원			2022년 인원		
	목표	지원	달성률	목표	지원	달성률
I 유형	450,000	340,649	75.7	500,000	219,527	43.9
II 유형	190,000	81,268	42.8	100,000	65,284	65.3
일경험프로그램	43,000	11,125	25.9	25,000	22,598	90.4

주: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년은 해당없음

2.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수를 말함(이월자는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높이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 유형을 중심으로 설계했던 수당을 변경하여 II유형 조건부수급자³⁰⁾까지 포함시켰으며, 본래 1회 50만원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I 유형의 경우 구축수당 잔액의 50%(정률, 최대 100만원), II유형 50만원 정액으로 변경하였다.

[2023년 조기취업성공수당 변경내역]

	2022	2023
지급대상	I 유형	I 유형 + II유형 조건부 수급자
지급금액	1회 50만원	I 유형 : 구축수당 잔액의 50% (최대 100만원) II유형 : 50만원
취업요건	구축수당 3회차 수령 이전	구축수당 4회차 수령 이전

주: 구축수당 잔액이란,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한다는 의미임. I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6회차)에 걸쳐 수령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고용보험법상의 '조기재취업수당'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은 참여자는 요건 충족(6개월 이상 근속 유지 등) 시 취업성공수당도 다시 수령할 수 있지만(최대 150만원)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점, ②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등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되는 참여자를 뜻한다.

에 성공하여야 하지만, 조기취업성공수당의 경우 2023년부터 구축수당 4회차 수령 전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수당 일수의 3분의 2까지 취업에 성공하면 되는 점, ③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이상의 근속 유지 요건이 있지만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근속 유지 없이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 추계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131건으로 시정 14건, 주의 42건, 제도개선 85건이며, 이 중 10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01건이며, 조치중 30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사업 등 3건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0	0	14	39	82	(10)	125	97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0	0	1	2	0	3	1	2
새만금개발청	0	0	0	2	1	0	3	3	0
합계	0	0	14	42	85	(10)	131	101	3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학연 혁신허브, 주거·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사업추진 결과 예산현액 248억 4,200만원 중 16억 200만원만이 실집행(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6.4%)되었다.

국회는 보조금의 집행을 독려하고 기존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 집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였고, 선도사업지의 착공으로 실집행이 개선되었으며, 2023년 예산은 2022년 대비 74억원 감액된 136억원을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2년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사업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대학의 경우 교부된 예산을 전액 이월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0~2022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사업대상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은 2019년 선정된 선도사업지인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리카)의 캠퍼스혁신파크 구축을 위해 교부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지는 2021년 대비 2022년 실집행 실적이 개선된 상황이나, 2022년 신규로 선정된 전북대와 창원대는 교부된 예산을 전액 이월하였다.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사업 실행 현황(사업대상별)]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대상별	보조사업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0	강원대	888	0	888	0	888	0	0
	한남대	888	0	888	612	276	0	68.9
	한양대에리카	444	0	444	286	158	0	64.4
	합계	2,220	0	2,220	898	1,322	0	40.5
2021	강원대	9,601	888	10,489	1,147	9,341	0	10.9
	한남대	9,225	276	9,501	141	9,360	0	1.5
	한양대에리카	4,583	158	4,741	202	4,539	0	4.3
	경북대	56	0	56	56	0	0	100
	전남대	56	0	56	56	0	0	100
	합계	23,521	1322	24,843	1,602	23,240	0	6.4
2022	강원대	6,646	9,341	15,987	9,747	6,240	0	61.0
	한남대	3,115	9,360	12,475	5,195	7,280	0	41.6
	한양대에리카	3,760	4,539	8,299	3,193	5,106	0	38.5
	경북대	600	0	600	575	25	0	95.8
	전남대	600	0	600	431	169	0	71.8
	전북대	140	0	140	0	140	0	0.0
	창원대	140	0	140	0	140	0	0.0
	합계	15,001	23,240	38,241	19,141	19,100	0	5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들 대학의 경우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사업의 초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교부된 예산 자체는 크지 않으나,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이 지연될 경우 인허가, 착공 등 후속절차 역시 지연되어 사업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학 인근의 기업 수, 기업의 유형 등이 달라지거나 산학연 혁신허브 입주를 준비하던 기업의 수요 역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LH)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 사업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 공동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LH) 부담분으로 구성되며, 국비와 공공기관 부담분이 선투입되고, 지방비는 국비와 공공기관 부담분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공공기관은 산학연 혁신허브를 30년간 기업임대공간으로 운영하며 얻는 임대수익을 통해 투입한 재원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입주기업의 수, 유형 등이 변동되는 경우 산학연 혁신허브의 임대운동을 통한 얻는 임대수익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이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사업의 초기 절차부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도시철도건설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³¹⁾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에 책정된 국고보조금(3,683억원)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1개월 간격으로 전액 교부하였는데,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일괄하여 교부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³²⁾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향후 사업별로 전년도 이월액이 과도하거나, 행정절차 소요 등 사업추진의 지연이 사전에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교부규모 및 교부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조금 교부업무를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지연 예상 사업에 대해 현장 여건, 행정절차 소요 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고, 매월 공정보고서를 통해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회로 시기를 조정하여 교부하였다고 조치 완료 보고하였다.

31) 3031-316, 320, 322, 326, 333, 335

3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 사업 보조금 집행 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거나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연말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을 하였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 사업³³⁾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 총사업기간이 연장되고,³⁴⁾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등을 수행하여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2022년 말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총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³⁵⁾ 당분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대부분을 연말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다.

[2022년도 도시철도 건설 사업 월별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보조금 예산현액	보조기관명	월별 교부금액					
			2월	4월	7월	10월	12월	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72,600	부산광역시	-	4,400	-	-	68,200	72,600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275,000	광주광역시	9,600	-	-	56,400	209,000	275,000

33)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3021-316),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3031-320), 양산도시철도건설(3031-322),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3031-326)

34) 2022년 6월에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3년,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사업은 6년, 양산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1년간 각각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

35)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사업은 2022년 11월 완료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12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예정이고, 양산도시철도건설 사업은 2022년 10월 완료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2023년 7월 완료될 예정이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2022년 6월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2024년 6월에 총사업비 조정 완료 및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할 계획이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보조금 예산현액	보조기관명	월별 교부금액					
			2월	4월	7월	10월	12월	계
양산도시 철도건설	96,000	경남 양산시	48,000	-	9,060	32,570	6,370	96,000
대전도시철도 2호선건설	13,100	대전광역시	-	-	-	-	13,100	13,1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도 도시철도 건설 사업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지방자치단체 실적행내역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72,600	14,043	86,643	37,549	72,600	23,506	49,094	0	32.4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275,000	81,383	356,383	109,350	275,000	27,967	247,033	0	10.2
양산도시철도건설	96,000	-	96,000	55,465	96,000	55,465	40,535	0	57.8
대전도시철도 2호선건설	13,100	459	13,559	150	13,100	0	309	13,100	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대전은 12월에 131억원을 교부받은 직후에 전액 불용 처리를 하였으며, 광주는 12월에 2,090억원을 교부받은 후 2,470억원을 이월하고 지방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2022년도 도시철도 건설 사업 지방비 미확보 지방자치단체]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보조금교부액 (A)	자부담액 (B)	총사업비 (C=A+B)	실집행액 (D)	실부담률 (B/C)	사업계획상 부담률
광주광역시	275,000	101,400	376,400	170,093	26.9	40
대전광역시	13,100	0	13,100	0	0	40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지방비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과도하거나 사업추진의 지연이 사전에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교부 규모 및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상황 및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책임성 있게 보조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전용 후 불용 최소 관리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1년 건설 사업 전체 예산 4,116억 900만원의 9.5%에 해당하는 389억 9,200만원에 대해 이·전용 및 조정집행을 하여, 과도한 이·전용을 발생시켰다.

이에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 향후 당해연도 예산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공정·추진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2년에는 물가상승분 반영, 준공기한 준수 등을 위한 필수소요에 대해서만 이·전용을 실시하였으며, 전체예산 405,202백만원의 3.0%인 12,324백만원에 대해서만 이·전용을 실시하는 등 이·전용을 최소화 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사업 및 2-4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기준 전용이 발생한 사업 중 불용액 규모가 가장 큰 두 사

업으로, 각각 10억 6,400만원 및 12억 600만원을 전용하여 3억 6,000만원 및 5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창의진로교육원 건립사업의 경우 물가변동 및 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분으로 인하여 공사비에서 9억 7,700만원을 전용, 감리비에서 8,700만원을 전용하였다. 이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3억 1,300만원을 이월하고 23년 3월 준공으로 준공예정 잔액인 공사비 집행잔액(3억 5,7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3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해당 사업의 전용 대비 불용액 규모는 33.9% (=361/1,064백만원)에 달한다.

2-4 생활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부족분을 인하여 공사비에서 10억 8,700만원 및 감리비에서 1억 1,900만원을 전용하였다. 이후 사업완료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해당 사업의 전용 대비 불용 규모는 44.1%(=532/1,206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감리비 부족으로 인하여 2022년 12월 21일 4,800만원을 전용하였음에도 감리비목에서 해당 전용액의 58.3%인 2,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감리비 물가변동 예상분을 21.5월에 미리 자율조정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감리비 부족분 4,800만원 전액을 전용 받은 후, 전용액(4,800만원)과 물가변동 예상분(2,000만원)의 차액(2,800만원)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국가재정법」제46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전용 시 사전에 불용 예상액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총 3건으로 제도개선 3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조치 완료가 3건으로 보고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1건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3.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여성가족부	0	0	0	0	3	0	3	3	0
합계	0	0	0	0	3	0	3	3	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미지정 문제(여성가족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2020. 5. 19.)하여 2022.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으로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참여로 시범사업이 무산되었고 2022년에는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이 지연되었다.

국회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미지정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연계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향후 광역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업무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지정·운영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여성가족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4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그마저도 법률이 예정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등 노무관리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 중이며 대규모 아이돌보미의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를 수행할 기관이 없어 광역센터 지정·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현행 법률에 규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등의 노무관리 업무 등을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2회계연도에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48억 8,300만원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예산 집행을 및 수요를 반영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보조금을 48억 8,300만원에서 20억 200만원으로 조정하여 교부하였고 시·도는 19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40.4%에 머물고 있다.

[2022회계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교부액(B)	집행액(C)	집행률(C/A)
서울	457	196	189	41.3
부산	293	113	111	37.7
대구	293	95	95	32.4
인천	293	40	37	12.8
광주	222	58	58	25.9
대전	222	82	82	36.9
울산	222	75	75	33.8
세종	222	107	103	46.5
경기	457	164	157	34.3
강원	293	143	143	48.9
충북	222	55	51	22.8
충남	293	50	50	17.0
전북	293	216	216	73.6
전남	293	228	227	77.5
경북	293	133	133	45.3
경남	293	193	193	66.0
제주	222	55	55	24.8
합계	4,883	2,002	1,974	40.4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현황을 보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4개의 시·도만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2개의 시·도는 2023년 중 운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11개 시·도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보류한 채 서비스제공 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광역거점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시·도마저도 법률에 규정된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근로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수행 중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도에서는 광역지원센터를 위탁받아 대규모 아이돌보미의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를 수행할 기관이 없어 광역센터 지정·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 규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수반되는 아이돌보미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업무 등을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³⁶⁾

[지자체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진행상황]

구분	시도	기관명(법인)	광역지원센터 진행상황
광역 센터 선정 완료 (4)	세종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광역지원센터 지정 완료('22.3.) '22.6.27.부터 운영 중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2.7.1.부터 운영 중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2.8.1.부터 운영 중
	전남	영광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법인 난원)	'22.7.1.부터 운영 중
추진 중 (2)	충북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5. 운영 예정
	대구	달서구가족센터(가정복지회)	'23.7. 운영 예정
추진 보류 (11)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법률 개정 후 센터 지정 진행 예정 (현재 광역거점기관으로 운영 중)
	울산	사회복지법인삼일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삼일사회복지재단)	
	부산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인천	미추홀구가족센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직영	
	경북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재)당진시복지재단	
	광주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	
	강원	원주YMCA(원주기독교청년회)	
	대전	대전광역시가족센터(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	제주시가족센터(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주: 광역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

3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의안번호 2121016

①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②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업무를 광역지원센터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 록

[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9	2020	2021
국회운영 위원회 (1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사업 집행률 제고	○	-	○
법제사법 위원회 (10건)	법무부	공익법무관 감소 대책	○	○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	○	○
		임대차분쟁조정위 실적제고	○	○	○
		부동산투자이민재검토	-	○	○
		범죄신고자보호활성화	○	○	○
		교정공공요금부족개선	○	○	○
		특별감찰관공석개선	○	○	○
	감사원	재심의 처리 기한 준수 관련	-	○	○
	대법원	토지대여료 정확한 추계에 의한 세입예 산 편성 필요	-	○	○
		국선번호료의 적극적 집행 노력 필요	-	○	○
정무 위원회 (13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 총리비서실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	○	○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정비 필요 등	-	○	○
	국가보훈부	적정 진료단가 반영 및 진료인원 추계 정 확성 제고 필요	○	○	○
		교통시설 이용감면액 전액 국가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	○
	공정거래 위원회	실효적인 과징금 징수 관리방안 마련	-	○	○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임의 체납액 최소화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	○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	○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거래행태 개선	○	○	○
			○	○	○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	○	○	○
	국민권익 위원회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의 납부 독려 필요	○	○	○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9	2020	2021
기획재정 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국가재무제표) 오류 개선 필요	○	-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검토 시 BIS비율 예측의 정확성 제고 등을 통한 적정 시기 결정 필요	-	○	○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제고 필요	-	○	○
	조달청	조달청 보유 회소금속의 신속한 이관 필요	○	-	○
	통계청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	○
과학기술보 방송통신 위원회 (6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지원	○	-	○
		출연연구기관 총괄(성과급)	○	-	○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	○	-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	○	○
	방송통신 위원회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	○	○
외교통일 위원회 (3건)	통일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LS전선의 민간출연금과 관련하여 출연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	○	○
		북한인권재단 출범	○	-	○
국방위원회 (7건)	국방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	○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 련 필요	○	○	○
	방위사업청	상륙공격헬기	○	○	○
		보라매(R&D)	○	○	○
		CH/HH-47D 성능개량	○	-	○
		신경작용제예방패치	-	○	○
		신속시범획득	-	○	○
		연구수행기관변경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	-	○	○
행정안전 위원회 (8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실집행 부 진 개선 필요	-	○	○
	경찰청	경찰병원 전년도세계잉여금 적정 세입예 산 편성 필요	-	○	○
	인사혁신처	퇴직수당	-	○	○
		임대주택건립	○	○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보전비용 미반환금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	○	○
		과도한 세목변경 주의 필요	-	○	○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집행근거 마련 필요	○	-	○
		한국선거방송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9	2020	2021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6건)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등	-	○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실적 제고	○	-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에너지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	-	○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 교원 확충	○	-	○
		전수교육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실집행 제고 필요	○	○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총액계상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	-	○	○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25건)	농림축산 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	○
		폐업지원	○	○	○
		농촌유희시설 활용 창업지원	○	○	○
		가축사체처리지원	-	○	○
		공익기능증진직불	-	○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농촌고용인력지원	-	○	○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	○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	○	○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	○	○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	○	○
	농촌진흥청	고위험식물병해충격리시험동(BL3)구축	-	○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활성화	-	○	○
		산림병해충방제	○	-	○
	해양수산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	○	○
		연안정비사업	○	-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사업	○	○	○
		어선거래시스템	-	○	○
		노후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	○	○
	해양경찰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	○	○
		통신위성장비관리	-	○	○
		세입	-	○	○
		VTSG구축운영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9	2020	2021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15건)	산업통상 자원부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	○	○
		중고차수출복합단지조성	-	○	○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	○	○
		산업단지환경조성	-	○	○
	특허청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개선 필요	○	-	○
		책임운영기관 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	○	○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상환유예 대책마련 필요	-	○	○
		정책자금 융자사업 부실률 관리 필요	○	○	○
		중소기업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
		연구개발 환수금 및 기술료 징수실적 제고	-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개선 필요	-	○	○
		모태펀드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방안 마련	-	○	○
		기술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	-	○
		비대면서비스플랫폼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바우처사업 개선필요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
보건복지 위원회 (28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	○	○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	○
		의료기술시험연수원구축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지원	-	○	○
		차상위계층지원	-	○	○
		공공전문진료센터지원	-	○	○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및운영	-	○	○
		음주폐해예방관리	-	○	○
		마약치료및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	○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	○	○
		장애수당(기초)	-	○	○
		발달장애인지원	-	○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	○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및관리체계구축	-	○	○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국민인식개선	-	○	○
		의료기관안전및질관리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9	2020	2021
		생계급여	○	○	○
		다함께돌봄사업	○	○	○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	○	○	○
		취약지등전문의료인력양성	○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	○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	○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	○	○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지원	○	○	○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온라인 시스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개선 및 적극적인 운 영 필요	-	○	○
환경노동 위원회 (23건)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	○	○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	○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	-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관리 철저	-	○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예산 규모 조정	-	○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집행관리 철저	○	○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	○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	○	○
		생태계 훼손지 복원	○	-	○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	○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	○	-	○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
	기상청	항공기상정보제공 사용료 현실화	○	○	○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	○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	○
		기상레이더 운영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9	2020	2021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높은 비중	-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효과 제고	○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실적 저조	-	○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집행 부진	○	○	○
		체당금지급 회수 실적 저조	○	○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리 감독	-	○	○
국토교통 위원회 (42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 종합연구	○	○	○
		건축문화진흥	○	○	○
		건축안전	○	-	○
		용산공원조성사업지원	○	○	○
		스마트시티기반구축	○	○	○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	○	-	○
		부처연계형노후산단개발	○	-	○
		주택및주거동향조사	-	○	○
		주거급여지원	○	○	○
		재정비축진사업지원	-	○	○
		임대주택리츠출자	○	○	○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	-	○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	○
		교통사고예방지원	○	-	○
		교통안전공단출연	○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	○
		주차환경개선지원	○	○	○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운영비	-	○	○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	○	○
		첨단도로교통체계	○	-	○
		자율자동차상용화	○	-	○
		일반공항시설관리	-	○	○
		흑산도소형공항건설	○	-	○
		제주제2공항건설	○	-	○
		수소충전소구축	○	○	○
		도로유지보수	○	-	○
		수송차량구입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9	2020	2021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	○	○
		광역BRT구축	-	○	○
		개발제한구역관리	-	○	○
		도시재생사업	○	○	○
		주택성능보강	○	○	○
		국가교통조사	○	-	○
		스마트공동물류센터건립지원	-	○	○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	-	○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	-	○	○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	○	○
		자동차안전도강화	○	○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복합편의시설(체육관) 운영방안 마련 필요 불필요한 예산전용 지양	-	○	○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	○	○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	○	○
여성가족 위원회 (1건)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채권회수율 제고	○	○	○

주: 특정 세부사업에 국한되지 않으나 동일한 주제·내용의 지적이 있는 경우 1건으로 기재
(예: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결산분석시리즈 IV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2023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2983-287X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1-001361-10

ISSN 2983-287X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